





#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책임자 : 강 기 정(백석대학교)

공동연구자 : 변 미 희(백석대학교)

연구보조원 : 김 응 성(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현재 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할을 규정하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가능하므로, 델파이조사방법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38명이었고, 조사결과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t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13명이며, 2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analysis)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델파이 기법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는 다문화 전문인력을 다문화가족 전문가, 한국어지도사, 아동양육지도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등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4가지 유형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양성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전문가는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신규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대학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가로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은 다문화사회이해(3학점), 다문화가족복지정책(3학점), 다문화가족 상담 및 실습(3학점) 등이다. 그리고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다문화 관련기관에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은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다문화사회이해, 다문화가족복지정책, 다문화가족 상담 및 실습 등을 내용으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전문가를 신규 국가자격제도로 도입

하는 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대학에서 다문화가족전공이나 관련 학과의 연계전공과정으로 10과목 30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문화가족전문가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를 통해 도입하는 방법은 다문화가족 관련 학회 및 기관 다문화가족전문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인증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 한국어지도사는 기존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다문화가족 상담 등의 2가지 영역에 대하여 30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주관기관은 다문화 관련 기관 및 학회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아동양육지도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2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내용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아동발달 및 상담, 가족상담,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4가지 영역이며, 각 영역별로 20시간씩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관기관은 한국어지도사와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넷째,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은 기존의 법무부에서 지정한 ABT대학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교육 내용은 다문화 인식(awareness), 국제 사회의 이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객(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에게 교육, 행정,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교육을 30시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다문화가족 전문인력이 양성되려면,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학계,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깊고, 실질적인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인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차 례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가. 연구의 내용 .....	3
나. 연구의 방법 .....	3
<b>II. 선진국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사례</b> .....	<b>7</b>
1. 인구 현황 .....	7
가. 호주 .....	7
나. 캐나다 .....	8
다. 일본 .....	8
2.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10
가. 이민자 사회적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10
나. 이민자 상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21
다. 기타 영역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25
<b>III. 우리나라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b> .....	<b>29</b>
1. 수요 현황 .....	29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	29
2.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31
가. 다문화 관련 기관종사자 양성 교육과정 .....	31

나. 방문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	34
다. 다문화사회 강사 양성 교육과정 .....	36
라. 교육기관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37
<b>IV. 연구결과 .....</b>	<b>44</b>
1.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과 역할 .....	44
가.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과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 .....	44
나.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별 명칭과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 .....	47
다.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과 역할(안) .....	58
2. 다문화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	60
가. 다문화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조사결과 .....	60
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모형(안) .....	79
<b>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b>	<b>88</b>
1. 연구결과 요약 .....	88
2. 정책적 제언 .....	92
■ 주 .....	94
■ 참고문헌 .....	96
■ 부록 .....	98

## 표 차 례

<표 2-1-1> 호주 인구 증가율 (2008-2009) .....	7
<표 2-1-2> 캐나다 소수민족 인구 추이 .....	8
<표 2-1-3> 일본 등록외국인 분포 현황 .....	9
<표 2-2-1> 더글라스 대학의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종사자 프로그램 .....	15
<표 2-2-2> 세네카대학의 이민자 및 난민 대상 사회서비스 종사자 양성과정 ..	16
<표 2-2-3> 다문화공생추진사 양성과정 .....	17
<표 2-2-4> 다문화 소셜워커 양성과정 .....	19
<표 2-2-5> 다문화사회 코디네이터 공통필수과목 .....	20
<표 2-2-6> 조지 브라운 대학의 간문화 상담과정 .....	22
<표 2-2-7> 벤쿠버 전문대학의 지역사회 상담기술 과정 .....	23
<표 2-2-8> 다문화상담블런티어 양성강좌 .....	24
<표 2-2-9> 지역일본어교육·지원코디네이터 연수과정 .....	27
<표 2-2-10> 민간단체에 의한 강좌 .....	27
<표 3-1-1> 한국 내 등록외국인 분포 현황 .....	30
<표 3-1-2>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현황 .....	31
<표 3-1-3>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	31
<표 3-2-1>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 .....	33
<표 3-2-2> 다문화가족 교육 강사 양성과정 .....	34
<표 3-2-3> 방문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	35
<표 3-2-4> 다문화사회 강사 양성과정 .....	36
<표 3-2-5> 다문화상담학 과정 .....	37
<표 3-2-6> 교과과정표 .....	38
<표 3-2-7> 국제교류경영전공 교과목 .....	39

<표 3-2-8> 평생다문화교육 및 다문화교육 과정표 및 교과목 .....	40
<표 3-2-9> 교육과정 .....	41
<표 3-2-10> 연계전공 이수 과목 .....	42
<표 3-2-11> 평생교육원 전문인력 관련 강좌 .....	43
<표 4-1-1> 다문화가족 전문인력 유형 초안 .....	44
<표 4-1-2> 다문화가족 전문인력 유형의 타당성 조사 결과 .....	45
<표 4-1-3> 전문가 집단에 따른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화 .....	46
<표 4-1-4> 다문화가족전문가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타당성 .....	48
<표 4-1-5> 전문가 집단에 따른 다문화가족전문가 명칭과 역할 .....	49
<표 4-1-6> 방문교육지도사 명칭의 타당성 .....	51
<표 4-1-7> 전문가 집단에 따른 방문교육지도사의 명칭 .....	51
<표 4-1-8> 한국어지도사 명칭과 역할의 타당성 .....	52
<표 4-1-9> 전문가 집단에 따른 한국어지도사의 명칭과 역할 .....	53
<표 4-1-10> 아동양육지도사 명칭과 역할의 타당성 .....	54
<표 4-1-11> 전문가 집단에 따른 아동양육지도사의 명칭과 역할 .....	55
<표 4-1-12> 다문화이해교육강사의 명칭과 역할의 타당성 .....	56
<표 4-1-13> 전문가 집단에 따른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명칭과 역할 .....	57
<표 4-1-14> 다문화가족 전문인력 유형 및 역할(안) .....	59
<표 4-2-1> 다문화가족전문가의 자격 조건 .....	61
<표 4-2-2> 한국어지도사의 자격 조건 .....	63
<표 4-2-3> 아동양육지도사의 자격 조건 .....	65
<표 4-2-4>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	66
<표 4-2-5> 다문화가족전문가 교육훈련기관 .....	67
<표 4-2-6> 한국어지도사 교육훈련기관 .....	69
<표 4-2-7> 아동양육지도사 교육훈련기관 .....	70
<표 4-2-8> 다문화이해교육강사 교육훈련기관 .....	71

<표 4-2-9> 다문화가족 전문 건강가정사 : 대학 교육 .....	79
<표 4-2-10> 다문화가족 전문 건강가정사: 신입직원 교육 .....	80
<표 4-2-11> 국가자격제도 신설 : 다문화가족전문가 양성교육 .....	82
<표 4-2-12>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 다문화가족전문가 양성교육 .....	83
<표 4-2-13> 한국어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	85
<표 4-2-14> 아동양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	86
<표 4-2-15>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양성과정 .....	87

##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방법 및 절차 흐름도 .....	6
[그림 V-1]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 및 역할 .....	89
[그림 V-2]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9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화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 삶의 존재 양식의 다양성은 주로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 캐나다 등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간주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임을 오랜 기간 민족적 자긍심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다문화, 다인종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과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적령기 여성의 부족과 농촌지역의 사회적 여건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불과하였는데, 2007년 한국의 혼인신고 건수의 11%가량이 국제결혼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3만 9천 283명에 이르렀고,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이 기간 내에 13만 6천 556명으로 남자가 1만 7천 783명(13%), 여자가 11만 8천 773명(87%)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 1)(법률 제8937호)을 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지원, 아동의 보육과 교육 지원, 다국어 서비스 제공, 생활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 전국에 171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교육되지 않아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 관련 업무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업무로 확장하여 본다면, 더욱더 다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필요성이 대두된다. 2009년 5월 현재 외국이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는 총 743개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국제교류재단, 종합사회복지관,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 304개, 종교단체가 87개,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민간단체가 352개 등이다. 이들 기관별로 종사자 수는 차이가 많았으나, 평균 3~4명 정도 근무한다고 가정해도 총 종사 인력은 2,200~3,000명 정도가 된다. 여기에 각 기관에서 상근, 비상근으로 일하는 각종 강사 예를 들자면 한국어강사, 한국문화강사, 다문화강사, 다문화사회이해강사, 방문교육지도사 등의 인력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한다(민무숙 외, 2009).

이와 같이 다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는 다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지 못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교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유한 인력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할을 규정하고, 이들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민무숙 외(2009)가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후순준 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 교육과정의 현황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인력의 유형을 정리하고, 각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의 내용

연구내용은 먼저 현재 현장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의 직무와 역할을 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이해강사, 한국어강사 등 다문화사회전문가, 다문화가족전문가, 다문화아동방문지도사 등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역할을 규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인증기관 즉 교육의 주체 및 교육대상의 학력, 관련 자격증 소지 등의 자격조건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 나. 연구의 방법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가능하므로, 델파이조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 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기법이며,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립, 중재, 타협의 방식으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한 하향식 의견 도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으로 1948년 미국의 RAND연구소에서 개발되어 IT분야, 연구개발분야, 교육분야, 군사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델파이 기법의 주요 특징은 추정하려는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에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

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 주로 우편이나 e-mail을 통한 통신수단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돌출된 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기계획수립 : 측정대상 전제조건 확인, 전문가 섭외, 역할배정
2. 산정 : 전문가 각자의 경험지식 기반 산정
3. 합의도출 : 의견조정작업, 합의도출, 중재, 반복수행
4. 정리 및 기록 : 합의결과 정리, 산정치 결정, 전제조건 정의

본 연구에서는 위의 델파이 기법 수행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은 현직 교수, 연구원 등 학계 17명(44.7%), 다문화 관련 현장경험이 2년 이상인 전문가 21명(55.3) 등 총 38명을 조사하였다. 현장전문가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상담사, 한국어지도사, 방문지도사,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 도출의 과정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하고자 한다. 1차 조사에서는 다양한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조사하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합의된 다양한 다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먼저 e-mail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1차 조사는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 빈도분석, 학계와 현장전문가 집단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관식 문항의 경우는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심층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델파이조사에 이어 전문가 집단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analysis)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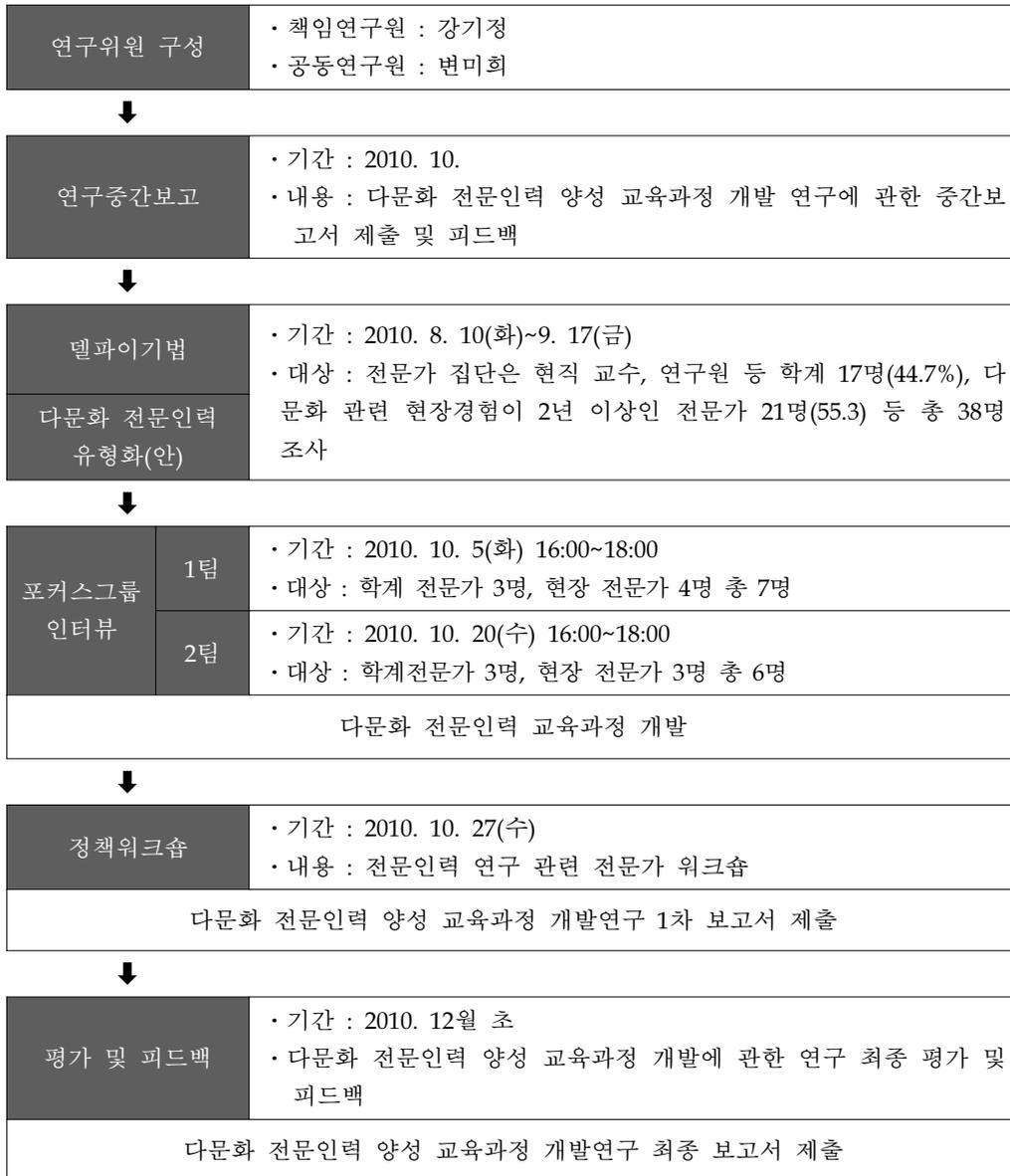
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료도출과정을 체계화하는 기법이다. 즉 내용분석은 신문기사나 인쇄물을 비롯해서 각종 연구물이나 개인과 집단 면접 자료 등을 분석해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양적 자료화 하는 과정이다.

포커스 그룹(focus group) 인터뷰는 참여자 수가 6~8명이 적정하므로, 2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sup>1)</sup>. 첫 번째 팀에는 학계 전문가 3명과 현장 전문가 4명 등 7명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였고, 두 번째 팀에는 학계전문가 3명과 현장 전문가 3명 등 총 6명이 참여하였다. 1팀은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백석대학교에서 진행하였고, 2팀은 2010년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에게는 교통비를 포함하여 약간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인터뷰의 사회 및 진행은 연구의 공동연구자가 진행하였고, 모든 토론 내용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연구보조원이 녹취록을 만들었으며, 연구자 2인이 녹취록을 내용분석하였다. 내용분석한 결과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였던 모든 전문가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전문가들이 검토한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최종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에 대한 절차의 흐름은 [그림 I-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1) 포커스 그룹(focus group) 명단

팀	참여자	현직	학력
1팀	A	다문화관련센터 팀장	사회복지학 박사
	B	아동양육지도사	사회복지학 학사
	C	한국어지도사	교육학 학사
	D	방문교육사업 담당	사회복지학 학사
	E	교수	가정학 박사
	F	교수	아동복지학 박사
	G	교수	가족복지학 박사
2팀	H	다문화관련센터 센터장	교육학 석사
	I	다문화센터 팀장	사회복지학 석사
	J	사회복지관 관장	사회복지학 박사
	K	연구소 책임연구원	중문학 박사
	L	교수	사회복지학 박사
	M	교수	아동복지학 박사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그림 I-1] 연구방법 및 절차 흐름도

## II. 선진국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사례

### 1. 인구 현황

#### 가. 호주

호주 인구는 2009년 6월말 현재 21,875,000명이며, 2008년에 비해 443,139명이 증가되었으며, 아래 표에 자연증가와 이주자 증가 수를 제시하였다.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호주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자연증가보다는 해외에서 이주해 오는 이주자 수의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NOM은 호주로 이주해 오는 인구수에서 호주에서 해외로 이주해 가는 인구수를 제외한 수이다.

<표 2-1-1> 호주 인구 증가율 (2008-2009)

(단위: 명)

주	NOM(Net Overseas Migration)	자연증가
NSW	85,482	49,891
Vic	78,843	34,317
Qld	54,410	40,110
SA	17,030,	5,954
WA	42,806	18,073
Tas	1,872	2,554
NT	1,459	2,825
ACT	3,402	3,051
전체	285,347	157,732

출처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Immigration Aspects 2008-09 Edition, Australia's population.

## 나. 캐나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제시하였듯이, 2006년에 전체 인구에서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6.3%였는데, 2031년이 되면 30.6%로 두 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표 2-1-2> 캐나다 소수민족 인구 추이

(단위: %)

소수민족	2006	2031
비소수민족인구	83.7	69.4
소수민족인구 전체	16.3	30.6
중국인	3.9	6.4
남아시아	4.1	8.7
흑인	2.5	4.3
필리핀	1.3	2.4
라틴아메리카	1.0	1.7
동남아시아	0.8	1.1
아랍	0.8	2.2
서아시아	0.5	1.2
한국인	0.5	1.0
일본인	0.3	0.3
기타	0.7	1.2

출처 : Statistic Canada(2010). Projections of the Diversity of the Canadian Population 2006 to 2031.

## 다. 일본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증가 일로를 걷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올드커머<sup>2)</sup>인 한국, 조선, 중국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브라질, 페루 등 남미 국가의 이주 노동자, 일본인과 결혼해 정착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온 일본인 배우자 등 뉴커머<sup>3)</sup>들의 괄목할 만한 증가가 있다. 이 뉴커머의 특징은 일본 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가 점점 장기화, 정주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녀 모두 연령층이 20~30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결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결혼 가족과 외국인 가족 사이에서 부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와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9월말 현재 일본의 외국인등록자수는 2,186,121명(법무성 등록외국인 통계)이다. 일본계 3세가 정주자 자격으로 일하게 된 1990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出入國管理および難民認定法, 1989년 개정. 이하, 입관법) 개정을 전후해서 외국인등록자수는 증가하고 있다<sup>4)</sup>.

<표 2-1-3>의 자료를 보면, 2009년도 9월말 일본의 등록외국인 수는 218만 여 명으로 총 인구 대비 1.7%로, 가장 많은 외국인은 도쿄도(東京都)에 거주하고 있으며 415천 명이 도(道) 인구 중 3.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아이치현(愛知縣)이 214천 명으로 2.9%, 오사카부(大阪府)가 209천 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카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 치바현(千葉縣), 효고현(兵庫縣), 시즈오카현(靜岡縣), 이바라키현(茨城縣), 교토부(京都府) 순으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

<표 2-1-3> 일본 등록외국인 분포 현황

(2009.10.01. 현재)

지 역	총인구 (단위 : 천명)	외국인등록자수 (단위 : 명)	총인구대비 (%)
일본국(日本國)	127,510	2,186,121	1.7
도쿄도(東京都)	12,868	415,058	3.2

아이치현(愛知縣)	7,418	214,816	2.9
오사카부(大阪府)	8,801	209,935	2.4
가나가와현(神奈川縣)	8,943	173,039	1.9
사이타마현(埼玉縣)	7,130	123,600	1.7
치바현(千葉縣)	6,139	115,791	1.9
효고현(兵庫縣)	5,583	102,059	1.8
시즈오카현(靜岡縣)	3,792	93,499	2.5
이바라키현(茨城縣)	2,092	56,362	2.7
교토부(京都府)	2,622	52,998	2.0
기타	62,122	628,964	1.0

출처 : 일본 법무성(2009), 2009년도 등록외국인통계.

## 2.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가. 이민자 사회적응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1) 호주: 간문화 훈련 과정(Cross Cultural Training)

호주에서는 행정기관, 지역사회기관, 보건기관, 복지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간문화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에서 간문화 훈련 과정이 많이 진행되는 이유는 호주 사회가 이민사회라서, 다양한 민족,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문화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5년에 호주정부 이민과 다문화부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간문화 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과정이 개인과 조직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간문화 훈련 과정의 매니저, 훈련 강사, 참여자 718명을 조사하였고, 간문화 훈련과 관련된 종사자 195명에게

컨설팅을 받은 연구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간문화 훈련의 2/3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기관에서 제공되고 있고, 민간영역에서 1/3이 제공되고 있다. 이 간문화 훈련과정은 일반적인 문화 인식 51%, 전문화된 훈련 22%,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일하기 16.2%, 통역사와 함께 일하기 7.4%, 훈련강사 과정 3.5%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련과정은 평균 6.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훈련 과정의 훈련강사는 90%가 호주 시민이며, 여성이 77%, 68%가 두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으며, 평균 연령은 48세였다. 이들은 간문화 훈련 과정 뿐만 아니라 연구와 개발직에 종사하거나 다른 형태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사람들이었다([www.immi.gov.au](http://www.immi.gov.au)).

구체적인 간문화 상담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먼저 마가렛 본호스트(Margaret Bornhost)에서 제공하는 간문화 훈련 과정은 1일 7시간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www.mbcross-cultural.com.au](http://www.mbcross-cultural.com.au)).

-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문화 역량의 개념
- 퀸즈랜드주의 다문화 정책
- 퀸즈랜드주의 인구 분포
-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
- 이민과 난민 경험
-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
- 효율적으로 전문 통역사 등과 함께 일하기

새희망재단(New Hope Foundation)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문화 훈련 과정은 수강생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주제로 워크숍이 제공되고 있다. ([www.newhope.asn.au/](http://www.newhope.asn.au/))

- 난민 청소년을 고객으로 일하기 : 효과적으로 난민 청소년과 일하는 방법과 전략에 대해 학습함
- 난민 클라이언트를 효과적으로 사례관리하기 : 난민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 관계, 가정폭력 등과 같은 이슈들과 효과적인 사례관리 기술의 습득

- 기관의 문화적 역량 키우기 : 기관과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문화 역량을 갖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발달시키는 기술 등을 학습함
- 아프리카 가족을 고객으로 일하기 : 아프리카 난민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사례관리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습득함
- 버마 가족을 고객으로 일하기 : 아프리카 난민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사례관리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기술을 습득함

## 2) 캐나다

### 가) 비씨 주 AMMSA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사례 : AMMSA(Affiliation of Multicultural Societies and Services Agencies of BC)

1977년 몇 개의 다민족 서비스 협회(society)로 시작된 이 조직은 현재 비씨주의 25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85개 멤버 단체(agency)로 구성되어 있다. 이민자 단체들에게 계속적으로 업무관련 업데이트 된 정보들을 신문이나 이민국 발표, 연구자료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는 “Settlement Net”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이들에 걸쳐서 BCSAP Conference 행사를 주관했으며 비씨 주 전역에 걸쳐서 일하고 있는 정착 서비스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네트워킹을 하고 또 시간별로 열린 워크숍과 패널 토론을 통해 정착서비스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각 서비스 단체 종사자들에게 “Safe Harbour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 서비스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대우와 위험요인 등을 자각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매년 개최하는 “Multicultural Health Fair”는 현재 4회 열렸는데, 약 2,000여명의 이민자 참가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건

강 관련 정보 얻을 수 있다.

또한 AMSSA는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의 펀딩으로 온라인 다문화 건강 자원(Multicultural health Resources)를 운영하고 있다(www.amssa.org).

**나) 온타리오주 ‘이민자서비스기관협의회’: OCASI(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Immigrants)**

온타리오주 ‘이민자서비스기관협의회’(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Immigrants: OCASI)는 1978년에 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 기관들이 기관들의 결속을 도모하고 온타리오주 정부 및 캐나다 연방정부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결성한 협의회 조직으로서, 온타리오주 내의 200여 이민자 서비스 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표적 이민자 서비스 기관 협의단체이다. OCASI의 여러 설립 목표 중 중요한 하나는 이민자 서비스 기관에 소속된 정착지원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전문 교육훈련(professional development)이다. 전문 교육훈련과 관련한 OCASI의 목표는 이민자 정착지원 종사자들 및 자원 봉사자의 전문적인 소양을 증진시키고 이들이 경험하는 사례나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종사자들이 이 안에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OCASI는 따라서 회원 및 비회원 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 기관 및 소속 종사자들의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자신들의 집합적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자신들의 계속교육 요구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 체계를 기획하고 제공하고 있다.

OCASI가 기획·제공하는 전문 교육훈련의 영역은 크게 보아 이민자 정착상담(settlement counseling), 인종차별 예방(anti-racism), 여성 대상 폭력 예방(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youthprogramming) 정도로 요약된다. 이런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지역사회 대학과 이민 관련 연

구기관이 학문적 전문성을, 그리고 회원 기관의 종사자들이 현장 전문성을 제공하여 이루어지는 민·관·학 네트워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온타리오주에서는 정부제공 교육훈련 대행사업으로 전문가 교육훈련 프로젝트(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ET)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 9월 처음 시작된 이 PET 프로젝트의 목적은 연방정부의 공식 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인 ISAP(Immigrant Settlement Adaptation Program)와 NSP(Newcomer Settlement Program) 수행을 위해 고용되어 있는 이민자 정착지원 종사자들을 위한 공식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민자 정착지원서비스 기관들은 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공식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누누이 강조해 왔고, 이에 캐나다 연방정부가 호응하여 이뤄낸 성과로 볼 수 있다. 연방정부의 CIC(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가 재정을 지원하며, 온타리오주에서는 OCASI가 단독으로 위탁 수행한다. PET 프로그램이외에도 ‘이민자 정착지원 상담: 훈련 가이드’ 발간, 이민자의 정신건강 이해훈련 워크숍(Journey to Mental Health), ‘이민자 및 난민 여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차원의 전략 프로젝트’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민무숙 외, 2009).

#### **다) 더글라스 대학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종사자 프로그램(Douglas College Community Social Service Workers Program)**

더글라스 컬리지(Douglas College)는 비씨 주 밴쿠버에 3개의 캠퍼스 중 New Westminster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종사자 양성 프로그램인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종사자(Community Social Service Workers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졸업 후 이민자 단체,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80-90% 이상의 졸업생들이 이 기관들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파트타임 야간 강좌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학점을 이수하거나 업그レード하기에 용이하다. 45학점의 Certificate 과정과 60학점의 diploma 과정 모두 풀타임은

2년, 파트타임은 4년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회복지, 가족상담, 정착상담, 취업상담, 약물중독 등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폭넓은 해당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표 2-2-1> 더글라스 대학의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종사자 프로그램

<b>강좌명</b>	<b>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종사자 프로그램 (Community Social Service Workers Program)</b>
주최	더글라스 대학 (Douglas College New Westminster Campus)
학위 수여 여부	인증과정(Certificate): 45 학점 학위과정(Diploma): 60 학점 두 과정 모두 풀타임은 2년, 파트타임은 4년 과정임.
교육목적	이민자 단체,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함
강좌 수 및 강좌내용	사회복지, 가족상담, 정착상담, 취업상담, 약물중독

출처 : Douglas College, [www.douglas.bc.ca](http://www.douglas.bc.ca).

또한 더글라스 대학에서는 현재 정착서비스 종사자 특히, 취업 및 노동시장 관련 종사자에게 파트타임으로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제공하는 CDP(Career Development Practitioner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들, 직업 및 취업상담 과정, 직업 의사결정, 직업전환, 집단 취업상담, 직업재활, 노동시장 정보, 직업발달 등의 8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수업료는 총 3,345달러이다.

**라) 세네카 대학 이민자 및 난민 대상 사회서비스 종사자 양성과정  
(Seneca College The Social Service Worker - Immigrants and Refugees program)**

세네카 대학의 이민자 및 난민 대상 사회서비스종사자 양성 과정(The Social Service Worker - Immigrants and Refugees program)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과정은 2년 4학기로 진행되며, 졸업하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기가 올라갈수록 현장지향적인 방법과 실천에 유용한 교과목이 개설되며, 졸업하기 전까지 총 600시간의 현장훈련을 마쳐야 한다(민무숙 외, 2009).

<표 2-2-2> 세네카 대학의 이민자 및 난민 대상 사회서비스 종사자 양성과정

강좌명	이민자 및 난민 대상 사회서비스 종사자 양성과정 (The Social Service Worker - Immigrants and Refugees program)
주최	세네카 대학
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학위 수여 여부	전문 학사 학위 수여(2년 4학기 이수한 경우) 사회 서비스 종사자 협회의 공식인증(Social Service Worker Accreditation)
교육목적	연방정부 CIC의 공식 이민자 정착지원 서비스인 ISAP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강좌 수 및 강좌내용	1학기 : 다양성: 인식과 실제, 이민과 난민분야 개론, 법률·원칙과 윤리, 현장세미나 2학기 : 면접기술과 집단 역동 이해, 사회정책과 정부시스템, 다문화 사회의 개인과 사회, 현장세미나 3학기 : 사례관리방법과 상담원리, 기금모금방법과 프로젝트운영법, 현장실습 4학기 : 지역사회실천, 이주와 트라우마, 폭력, 정신건강, 현장세미나 및 실습

출처 : Seneca College, www.senecac.on.ca, 민무숙 외(2009).

### 3) 일본

#### 가) 군마대학 다문화공생추진사

일본의 지자체는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군마현이 군마대학, 군마현립여자대학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강좌를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한다.

우선, 군마대학은 2010년도부터 '다문화공생추진사' 양성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다문화공생추진사란 '국적이나 민족 등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함께 질 높은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문화공생 시

점을 가진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신산업의 창출을 지향한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말하며, 이수 후에는 군마현지사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나온다.

대상자는 교원, 의사, 행정관계자 등의 전문직, 기업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과정, 플래너 과정, 컨설턴트 과정 등 3개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각 과정에서 기초교육 30시간, 실무교육 30시간, 과제연구 10시간을 이수한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는 '다문화공생추진사' 자격증을 부여받아 다문화공생추진의 행위자로서 활약하게 된다. 아래 <표 2-2-3>에 군마대학의 다문화공생추진사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표 2-2-3> 다문화공생추진사 양성과정

강좌명	다문화공생추진사 양성과정 (多文化共生推進士養成ユニット)
주최	군마현
교육대상자	교원, 의사, 행정관계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 외국인 고용 기업관계자, 외국인학교관계자, 국제교류자원봉사자, 재일외국인, 재학생 등
자격증 수여 여부	군마현지사의 자격증 수여
수강료	각 코스 17,500엔
모집인원	10명 전후
교육목적	일본인주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을 지역의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그 활용을 실현하는 사회시스템이나 신사업을 창출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강좌 수 및 강좌내용	3 과정 - 애널리스트 과정 : 분석력 배양 코스 - 플래너 과정 : 기획력 배양 코스 - 컨설턴트 과정 : 실천력 배양 코스 각 코스는 기초교육 30시간, 실무교육 30시간, 과제연구 10시간을 수료해야 군마현지사가 인정하는 자격증이 부여된다.

출처 : 군마대학, [jst-tabunka.edu.gunma-u.ac.jp](http://jst-tabunka.edu.gunma-u.ac.jp).

### 나) 다문화 소셜워커

다문화 소셜워커는 크게 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해당국가의 언어, 문화에 속하고, 일본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외국인 당사자이다. 예를 들면, 브라질인으로 일본에 오래 살고 있어 일본어와 포르투갈어도 능통해서 두 문화를 이해하고, 브라질 커뮤니티에서도 신뢰받는 사람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은 일본인이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사를 말한다. 반드시 다른 나라의 언어에 정통하지 않아도 외국인 커뮤니티 및 지원 조직과 연계하여 일본의 가치관과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문화적으로 섬세한 대응 능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다문화 소셜워커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방법, 가치 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은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와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식, 의료 보건 시스템의 지식 사회 자원에 대한 지식 등을 들 수 있다. 기술 방식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상담 면접 기술, 사람과 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능력 등이 요구된다. 또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상대에 주입하거나 사례에 대한 객관적 상황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 다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지원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기 문화의 판단기준으로 상대를 단정하지 않는 문화적 섬세함과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체류 자격이나 입관법, 이주 노동자의 노동 환경, 이문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 등 외국인 문제와 관련된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다(민무숙 외, 2009).

II. 선진국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사례

<표 2-2-4> 다문화 소셜워커 양성과정

구분	아이치현(愛知縣)	군마현(群馬縣)	카나가와현(神奈川縣)
외국인 등록자비 (%)	전체 현민의 3.3% 브라질인>중국인>한국·조선인 순	전체 현민의 2.3% 브라질인>중국인>필리핀인 순	전체 현민의 1.9% 중국인>한국·조선인>필리핀인 순
강좌명	다문화 소셜워커 육성 강좌	다문화공생 소셜 워커 육성 강좌	다문화 소셜워커 실천자 강좌
주최	아이치현 국제과	군마현·군마현 의료사회복지사협회·군마현 사회복지사회·군마현 정신보건복지사회	카나가와현 국제과
주관	아이치현 국제교류협회 (아이치현 위탁)	군마현	카나가와현·카나가와국제교류재단
대상자	현내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 중에 ▪ 외국인 상담업무 종사 유경험자 ▪ 소셜워커 종사 유경험자 ▪ 외국인 어린이 교육 업무 종사 유경험자	▪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복지사 ▪ 주최자가 다문화공생소셜워커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인정하는 자	현내 거주, 근무, 재학 중인 자 ▪ 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 현내에서 활동을 예정하고 있는자(단체) ※외국국적주민상담·지원관련자, 사회복지사, 또는 예정자
정원	15명(상한18명)	20명	36명(정원 35명)
수강료	무료	무료	12,600엔
교육 시간	전 7회 총 42시간	전 9회 총 54시간	전 6회 총30시간
실시 현황	'08년 3년차 실시('08.11~12) ※2006~2012년 매해 실시예정.	'08년 1년차 실시 ('08.10~'09.2)	'09년 1년차 실시 ('09.1~3)
교육내용	▪ 다문화 공생현황 ▪ 다문화 소셜워커 (가치와 윤리, 사회보장, 정보 제공, 면접기법, 가정폭력과 지원, 아동학대와 육아지원, 정신 건강, 사회사업과정) ▪ 사례검토	▪ 다문화공생의 개념 ▪ 문화의 차이 ▪ 외국인의 이해(중국, 브라질, 한국, 필리핀) ▪ 외국인 아동, 학생의 문제와 현황, 외국인의 정신건강 ▪ 사회사업 사례	▪ 다문화 사회복지의 이미지연극 ▪ 사회사업 전개 과정 어린이교육사례 ▪ 사회사업의 시장 가정폭력사례 ▪ 다양한 문화를 배려한 사회사업: 고통자 복지 ▪ 그룹워크와 임파워먼트: 노동과 의료현장 ▪ 지역사회복지

출처 : 민무숙 외(2009).

### 다) 다문화사회 코디네이터

다문화사회 코디네이터란 조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 공감, 실천을 하기 위해 참가, 협동, 창조의 과정을 디자인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실현을 향한 활동을 구축, 전개, 추진하는 전문직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코디네이터가 존재한다. 첫째 유형은 조직 내에 부장, 과장, 계장 등과 같이 독자적 직위가 있는 경우로, 동경외국어대학의 경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 전문위원이라는 직위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유형은 조직 내에서 직무가 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국제교류협회와 같은 조직의 직원이나 NPO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 중 일부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요구한다. 셋째 유형은 조직 내 직위나 지위와 직접 관계가 없으나 코디네이터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여러 분야의 조직이나 기관과의 연계와 협동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민무숙 외, 2009).

이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통필수 과목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5> 다문화사회 코디네이터 공통필수과목

	1교시 (9:00-10:30)	2교시 (10:40-12:40)	3교시 (13:40-17:40)	4교시 (15:50-17:30)	
1일차	오리엔테이션	다언어·다문화사회개론(국내/해외) 외국인 수용정책	워크숍1 과제공유, 수강생의 발표, 개념도 만들기1	분석 방법 배우기	기초강연
2일차	언어와 문화1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란	다언어·다문화사회론1 경제-글로벌화와 외국인노동자, 기업의 다양성 관리	다언어·다문화사회론2, 정책-국가·지자체시민활동	워크숍2 과제공유, 실천과 과제에 대해 말하기, 전체 되돌아보기	

II. 선진국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사례

3일차	언어와 문화2 다문화사회에 서의 종교란	다언어·다문화사회론 3 복지-다문화지역사회에 서의 복지실현	다언어·다문화사회 론4 교육-국제교육·일 본어교육	워크숍3 과제파악과 분석, 양케 이트 작성, 전체 되돌아보기
4일차	언어와 문화3 다문화사회에 서의 언어란	다언어·다문화사회 실천1 이문화간 커뮤니케이 션	다언어·다문화사회 실천2 미디어 독해력편집, 발신	워크숍4 실천사례 읽기, 전체 되 돌아보기
5일차	언어와 문화4 제2언어 습득과 모국어 교육	다언어·다문화사회 실천3 자원봉사자, NPO, 사 회자원	다언어·다문화사회 실천4 참가와 협동, 네트 워크	워크숍5 개념도 만들기2, 다문화 코디네이터 전문성 개 요, 되돌아보기, 전문별 과별 준비

출처 : 민무숙 외(2009).

## 나. 이민자 상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1) 호주

호주 빅토리아대학(Victoria University)에서는 2년제 디플로마(Diploma) 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등에서 간문화 상담(Cross-Cultural Issues in Counselling) 과정(unit)을 12학점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의 목표는 개인의 문화적 지위를 자격하고, 다른 사람들이 학습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재 호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정치학적, 경제적 맥락에 대한 자각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인종차별주의, 사회정의, 두 화화의 역사, 난민 경험, 여성과 관련된 이슈, 고문 생존자, 호주 원주민과 호주의 2세대 등의 이슈들을 다룬다. 모더니즘과 포스터 모더니즘, 후기식민주의 등의 관점과 관련된 서방국가들의 이슈들에 대해서도 토론한다(<http://www.vu.edu.au>).

간문화 상담(Cross-Cultural Issues in Counselling)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

- 2년제 디플로마 국제사회개발학과  
(Graduate Diploma in International Community Development)
- 2년제 디플로마과정 상담학과(Graduate Diploma in Counselling)
- 2년제 디플로마과정 심리학과(Graduate Diploma in Psychology)
- 학사과정 심리학(Bachelor of Arts (Honours) Psychology)
- 석사과정 국제사회개발학(Master of International Community Development)

## 2) 캐나다

### 가) 조지 브라운 대학 간문화 상담 과정

(George Brown College cross-cultural Counselling Certificate)

조지 브라운 대학에서는 상담분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소지자이면서 이민자 정착지원기관의 종사자나 다문화 소통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세 과목의 간문화 상담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학점을 주지 않는 계속 교육 강좌이며, 세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강료는 한 과목당 270달러이며, 기초과목으로 간문화 기반 상담과 심화과목으로 간문화 상담- 개인과 가족, 간문화 상담- 집단과 지역사회 세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민무숙 외, 2009). 아래 <표 2-2-6>에 조지 브라운 대학의 간문화 상담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표 2-2-6> 조지 브라운 대학의 간문화 상담과정

강좌명	간문화 상담과정 (Cross-cultural Counselling Certificate)
주최	조지 브라운 대학
교육대상자	필수조건: 상담분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소지자 선택조건: 이민자 정착지원 종사자 다문화 소통에 관심이 있는 자

II. 선진국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사례

학위 수여 여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계속 교육 프로그램 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수강료	한 과목당 270 달러
교육목적	매일같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이민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상담에 임해야 하는가에 관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
강좌 수 및 강좌내용	3 과목 기초과목: 간문화 기반 상담으로 다문화적 감수성이 수반된 상담개입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다룬다. 심화과목: 간문화 상담-개인과 가족, 간문화 상담-집단과 지역사회 이 두 과목은 이민자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간문화 기반 상담을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식과 훈련을 제공한다.

출처 : George Brown College, www.georgebrown.ca, 민무숙 외(2009)

나) 밴쿠버 전문대학 지역사회 상담기술 과정

(Vancouver College Community Counseling Skills Certificate Program)

밴쿠버 전문대학의 지역사회 상담기술 과정(Community Counseling Skills Certificate Program)이 있다. 이 과정은 정착지원종사자, 가족지원종사자, 청소년문제 복지활동 전담가 등 이민자나 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교육과 전문적 훈련이 목적이며, 최소 15개월 최장 3년 동안 주당 하루부터 4일간의 저녁시간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민무숙 외, 2009).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2-7>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2-7> 밴쿠버 전문대학의 지역사회 상담기술 과정

강좌명	지역사회 상담기술 과정 (Community Counseling Skills Certificate Program)
주최	밴쿠버 대학
교육대상자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최소 35시간의 관련 분야 유급 또는 자원봉사경력 기본 상담과목 이수조건

학위 수여 여부	학위는 수여하지 않음 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교육목적	정착지원종사자, 가족지원종사자, 청소년문제 복지활동 전담가 등 이민자나 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교육과 전문적 훈련이 목적임
강좌 수 및 강좌내용	선수과목: 상담기술 필수과목 : 가족체계, 상담기초, 개인상담기술, 개인과 직업발달, 상담이론 선택과목: 집단상담기술, 직업상담기술

출처 : Vancouver Colleges, www.vccollege.ca, 민무숙 외(2009).

### 3) 일본

요코하마YMCA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상담블런티어 양성강좌'는 외국인의 주택임대를 지원하는 상담을 비롯하여 생활, 일 등에서 폭넓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블런티어를 양성하고 있다.

<표 2-2-8> 다문화상담블런티어 양성강좌

강좌명	다문화상담블런티어양성강좌
주최	요코하마YMCA
대상자	외국적주민의 상담블런티어활동에 흥미가 있는 자
정원	10명(선착순)
수강료	무료(재료비1,000엔)
교육시간	4회 총 6시간
교육내용	제1회: 오리엔테이션 제2회: 상담업무 1 제3회: 상담업무 2 제4회: 그룹워크숍

출처 : 요코하마YMCA, www.yokohamaymca.org.

## 다. 기타 영역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1) 호주

호주 빅토리아대학(Victoria University)에서는 단기 과정으로 이민법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3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요일마다 8시간씩 4주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호주 이민법에 대해 알고 있거나 복지, 행정, 공공 부분을 포함하여 이민 파트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전문성을 개발해 주는 과정이다. 등록금은 1,450달러이다. 이 과정의 수업내용은 다음과 같다(<http://www.vu.edu.au>).

- 법학 개론
- 호주 법체계 및 원칙 개론
- 호주법의 기원, 호주 헌법, 의회의 주권, 법원과 재판소, 권력의 분리, 법의 규칙, 관습법과 법령집, 의회법, 위임된 법(규칙), 관보의 공지사항, 장관의 정책방향
- 이민법 개관 : 이민법의 역사, 현행 이민법, 비자발급과 관련된 법적 시스템

한편 호주 빅토리아대학(Victoria University)에서는 문화와 다양성 의사소통과정(communication culture and diversity)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언어사용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다문화와 다언어 사회에서 의사소통패턴에 대해 언어의 사용법과 관련한 이론과 연구들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현재 호주사회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과 원인들을 탐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http://www.vu.edu.au>).

- 호주의 언어, 간 문화 의사소통, 문화다양성, 문화의 다름, 담론, 두 번째 언어의 습득과 유지, 이중언어, 언어의 선택과 사회적 정체성, 언어의 유지와 이동

이 과정은 12학점으로 운영되면,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다음과 같다.

- 2년제 디플로마 과정 TESOL(Graduate Diploma in TESOL)
- 석사과정 TESOL(Master of TESOL)

## 2) 캐나다

캐나다에서 법과 관련된 교육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PLEI(Public Legal Education and Information)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의 편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캐나다 내 주(province)와 테리토리(territory)에 한 개씩 총 13개 지역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주목적은 일반인들이 법(체계)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내 법적 사회적 자원들을 이용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언어 장벽, 경제적 이유, 차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PLEI는 우선적으로 각 지역사회 내 이민정착 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초청하여 가족법, 세입자 보호법, 근로 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www.legal-info-legale.nb.ca](http://www.legal-info-legale.nb.ca)).

## 3) 일본

군마현립여자대학교와 연계한 '지역일본어교육·지원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한' 연수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군마현 내의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지역의 현상·과제에 맞는 일본어교육·지원의 기획, 교재개발, 일본어교실의 운영 등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수에서는 우선, '군마의 일본어교육·지원의 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육의 배경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각각의 실라버스, 교재, 지도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문형축척형'과 '태스크(Task)축척형'을 비교하면서 연습형식으로 진행된다.

<표 2-2-9> 지역 일본어교육·지원코디네이터 연수과정

<b>강좌명</b>	<b>지역 일본어교육·지원코디네이터 연수과정 (地域日本語教育・支援コーディネーター)</b>
주최	군마현
교육대상자	지역 일본어교육·지원 관련 자원봉사자
응모자격	일본어교육 관계자, 일본어교육능력검정시험합격자, 대학 등에서 일본어교육 트레이닝을 받은 자, 일본어교원양성 420시간 수료자, 국제교류협회 및 NPO 등에서 일본어교실운영에 관여하는 자 등
수강료	무료
모집인원	18명
교육목적	군마현 내의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의 생활환경향상을 위해 지역의 현상·과제에 맞는 일본어교육·지원의 기획, 교재개발, 일본어교실의 운영 등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강좌 수 및 강좌내용	2 과정(각 과정 21시간) - 매주 화요일 코스(13:00~16:10) - 토일 다이제스트코스(17:40~20:50) 각 코스는 지역에서의 일본어교육 문제, 실라버스연구, 교재연구, 지도법, 워크숍 등 5가지로 분류되어 진행된다.

출처 : 군마현, [www.pref.gunma.jp/index.html](http://www.pref.gunma.jp/index.html).

다음으로 다문화공생센터 오사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아동을 위한 일본어 지도자 양성강좌'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적 아동의 일본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NPO법인 중고등학생의 일본어지원을 생각하는 회에서는 '외국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일본어코디네이터 양성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표 2-2-10> 민간단체에 의한 강좌

강좌명	외국인 아동을 위한 일본어지도자 양성강좌	외국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일본어코디네이터 양성강좌
주최	다문화공생센터오사카	NPO법인 중고등학생의 일본어지원을 생각하는 회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

대상자	아동의 일본어학습지원에 흥미가 있는 자, 원칙적으로 전회기 출석가능자, 수료후 교실에서 활동가능한 자	일본어를 2년 이상 가르친 경험이 있는 자, 외국인상담이나 직장에 있는 자, 외국적 아동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자, 일본어교육코디네이터
정원	30명(선착순)	-
수강료	무료	무료(재료비 1,000엔)
교육 시간	10회 총 20시간	14회 총 21시간
교육 내용	제1회~2회 : 외국적아동의 현상 제3회~4회 : 지역일본어교실의 실정 제5회~8회 : 초중고에서의 대응 제9회 : 모국지원 제10회 : 외국사례	제1회~5회: 지역일본어지원문제, CSR과 사회공헌활동, 국제협력, 외국적아동의 일본어학습 등 제6회~10회 : 여성결혼이민자, 브라질아동, 난민, 이문화간커뮤니케이션 등 제11회~14회: 행정, 일본어포럼, 연대와 협동

출처 : 다문화공생센터 오사카, [tabunka.jp/osaka](http://tabunka.jp/osaka); NPO법인 중고등학생의 일본어지원을 생각하는 회, [home.e07.itscom.net/maki](http://home.e07.itscom.net/maki).

### III. 우리나라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1. 수요 현황

#####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과의 국교수교이후 중국국적자의 증가와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들의 괄목할 만한 증가가 있다.

한국의 외국인 특성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계주민의 5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계중국인은 전체 외국계주민의 39.9%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94.6%와 여성결혼이민자의 95%가 아시아출신의 이주자라는 점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시아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징은 연령층이 20~30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연령 격차가 크다는 점과 사전 정보·지식없이 결혼중개업체의 중개로 신속하게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결혼 가족 사이에서 부부, 가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문화, 인권 문제와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 한국의 외국인등록자수는 1,139,283명(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이다. 이는 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49,773,145명)의 2.3%에 해당되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던 09년(1,106,884명) 보다 32,399명, 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의 자료를 보면, 2010년도 1월 현재 한국의 등록외국인 수는 113만여 명으로 총 인구 대비 2.3%로, 가장 많은 외국인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337천 명이 경기 인구 중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이 336천 명으로 3.3%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09년부터 경기도가 09년 최다 거주지역인 서울시를 앞지르고, 10년 최다 거주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어 경남, 인천, 충남, 경북, 전남, 충북, 울산 순으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

<표 3-1-1> 한국 내 등록외국인 분포 현황

(2010.01.01. 현재)

지 역	총인구(단위 : 천명)	외국인등록자수( 단위 : 명)	총인구대비(%)
한국	49,773,145	1,139,283	2.3
경기	11,460,610	337,821	2.9
서울	10,208,302	336,221	3.3
경남	3,250,176	66,800	2.1
인천	2,710,579	63,575	2.3
충남	2,037,582	48,874	2.4
경북	2,669,876	46,658	1.7
전남	1,913,004	31,305	1.6
충북	1,527,478	30,138	2.0
울산	1,114,866	19,354	1.7
기타	12,880,672	158,537	1.0

출처 :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결혼이민자는 136,5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66,546명(48.7%), 베트남 32,472명(23.8%), 일본 10,189명, 필리핀 6,895명, 캄보디아 3,705명 순이며, 성별로는 여성 87%(118,773명), 남성 13%(17,783명)로 나타났다.

<표 3-1-2>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현황

(해당년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인 원	75,011	93,786	110,362	122,552	125,087	136,556
증감률	-	▲25.0%	▲17.7%	▲11.0%	▲2.1%	▲8.2%

※ 2010년 6월말의 증감률은 전년 동월(126,155명) 대비임.

<표 3-1-3>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2010년 6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기타
계	136,556	66,546	32,472	6,895	10,189	3,705	16,749
구성비	100%	48.7%	23.8%	5.0%	7.5%	2.7%	12.3%
남	17,783	10,825	161	195	822	8	5,772
여	118,773	55,721	32,311	6,700	9,367	3,697	10,977

출처 : 법무부(2010). 국내 체류외국인 120만명 첫 돌파, 보도자료.

## 2.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가. 다문화 관련 기관종사자 양성 교육과정

다문화 관련 기관종사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와 NGO 활동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각 별도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살펴보겠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는 별도의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아니라, 기본적 자격요건 즉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가족상담사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에 이들 가운데

데 선발해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양성되고 있다. 가족상담사를 제외한 상담사, 보육교사, 교원자격, 가정복지사 등 유사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는 신규종사자 교육, 행정실무 교육이 있으며, 이외에 종사자 워크숍, 상담 슈퍼비전 등이 진행되고 있다(민무숙 외,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 교육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센터장, 종사자, 행정종사자 등으로 분류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내용은 다문화가족 정책 및 방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소개 등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고, 센터장 교육은 리더십 워크숍, 종사자 교육은 우리 사회이해 교육, 부부 및 배우자 교육, 행정종사자는 행정실무교육 등으로 차별화되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다문화가족사업단, 2008; 2009).

두 번째로 NGO 활동가 교육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수원여성의 전화에서 실시한 이주여성활동가교육과 이주여성 인권지원 전문활동가 교육이 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 2009). 교육대상은 이주여성단체 활동가이고, 이주여성 활동가 교육의 교육내용은 세계화와 여성이주, 한국사회의 이주여성, 이주여성의 문화적 정체성, 정부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대안적 모델개발을 위한 워크숍, 단체활동사례 등이며, 2박 3일간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주여성 인권지원 전문활동가 교육에서는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대책, 한국의 다문화 정책, 국제이주와 빈곤, 다문화 감수성(젠더 감수성 훈련)/ 이주관련 법률 상식, 이주여성의 건강권 및 의료지원 시스템, 빈곤과 이주의 여성화, 이주여성의 인권과 상담의 실제 등이며, 하루 6시간씩 10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편 일반 가족의 경우에도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역량있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생활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왜냐

하면, 다문화 가족의 문화, 언어적 차이를 인해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3-2-1>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

부처	위탁기관	인력양성과정	파견기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국제결혼가정지원교육 전문가	국제결혼정보제공프로그램수행기관(42)
	이주여성긴급 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원	
	전국다문화가족 사업지원단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1)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언어지도사	
	서강대	다문화가족교육 전문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서비스요원	
무지개청소년 센터	다문화청소년 상담가	청소년기관 및 단체	
법무부	ABT대학 ('10년, 10개교)	다문화사회전문가과정	사회통합이수제기관 ('10년, 10개교)
교육과학기술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교사연수	각 초·중등학교
	서울교대	이중언어교수요원	서울시내 초등학교 (7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다문화이해강사	학교·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공무원교육원	다문화관리자과정	

출처 : 민무숙 외(2009)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여성가족부(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에서 다문화가족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생활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국제

결혼 다문화사회 사전교육 전문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의내용은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 정책의 방향, 창의적인 교수법 등이다.

<표 3-2-2> 다문화가족 교육강사 양성과정

명칭	다문화가족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	국제결혼가정지원교육 전문가 심화교육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시행 부처	여성가족부	
대상	해당 프로그램 현직 강사 대상 심화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사 겸임 실무자 및 현직 강사 <input type="checkbox"/> 결혼이민자가족교육전문가과정('06)수료자 <input type="checkbox"/> 국제결혼예비·배우자교육전문가과정('08)수료자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사회 국제결혼 사전교육 전문가과정('08) 수료자 61명 <input type="checkbox"/> 국제결혼가정 지원교육 전문가 심화교육과정('09) 수료자 41명
교육 목표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배우자 교육, 자녀지원 등 가족교육 전문가 역량 강화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국제결혼을 계획한 남성 혹은 국제결혼한 부부 대상으로 다문화이해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전문가 양성
내용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지원정책방향 <input type="checkbox"/> 창의적 교수법 <input type="checkbox"/> 기본법 및 센터사업이해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사회 및 국제결혼가정이해 <input type="checkbox"/> 국제결혼가정 지원 정책 및 법률, 사업이해 <input type="checkbox"/> 가족액션플랜
교육 시수	<input type="checkbox"/> 총 6시간(1일)	<input type="checkbox"/> 총 21시간(3일)
활동 분야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교육강사로 활동	<input type="checkbox"/>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수행기관(전국42개)에서 강사로 활동

출처 : 민무숙 외(2009)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 나. 방문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III. 우리나라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물리적 거리가 멀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센터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양성하고 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한국어교육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로 분류되며, 한국어교육지도사는 한국어교원, 전직 교사, 한국어 교육관련 전직 공무원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아동양육지도사는 전직교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기타 사회활동가 및 전문자원봉사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 <표 3-2-3>에 구체적인 방문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시한다.

<표 3-2-3> 방문교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명칭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교육(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	
시행부처	여성가족부	
대상	<input type="checkbox"/> 한국어 교원, 전직교사, 한국어 교육 관련 전직 공무원 등	<input type="checkbox"/> 전직교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기타 사회활동가 및 전문자원봉사자 등
교육목적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인력 양성	
내용	<input type="checkbox"/> 한국어전문교육 <input type="checkbox"/> 임신 및 출산교육 <input type="checkbox"/> 한국어교육지도사활동매뉴얼 설명	<input type="checkbox"/> 부모역할교육 <input type="checkbox"/> 성교육 및 건강 <input type="checkbox"/> 아동양육지도사 활동매뉴얼 설명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정책 및 다문화사회이해 <input type="checkbox"/> 상담 및 법률교육 <input type="checkbox"/> 정보제공	
교육시수	<input type="checkbox"/> 총 50시간(4박5일)	
활동분야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방문, 한국어교육 및 자녀교육지도	

출처 : 민무숙 외(2009)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 다. 다문화사회 강사 양성 교육과정

다문화사회 강사 양성 교육과정은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담당하게 하려는 목적과 일반국민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게 하려는 목적 등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양성 교육과정은 아래 <표 3-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법무부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과정,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이 있다.

<표 3-2-4> 다문화사회 강사 양성과정

명칭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양성과정 (ABT대학)	다문화사회전문강사양성 (전국다문화가족 사업지원단)	다문화전문강사양성과정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시행 부처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 목표	□ 사회통합교육이수제 다 문화사회 이해과정활동 및 일반교육 강사 양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 다문화 관련 전문성 있는 강사 양성
내용	□ 한국 이민정책과 이 민관계법 □ 이민자를 위한 한국 사회 이해 및 세미나 □ 강의기법 및 교수법 □ 해외지역사회 이해 □ 해외한민족 이해 □ 다문화현장 전문가 특강	□ 다문화정책 개괄 및 소개 및 이해 □ 다문화가족 이해 및 교육 프로그램, 상담, 사 례관리 □ 주요국가 문화소개 □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윤리와 철학 -> '09년에는 법무부교육 내용과 동일하게 맞춤	□ 다문화 교육의 이해 □ 교수법 워크숍 □ 다문화 교육 체험 및 접목 □ 교육 매체 제작 및 활 용법 □ 교육 콘텐츠 개발 □ 강의 실습 □ 시범교육

III. 우리나라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대상/자격	<input type="checkbox"/> 전문대 졸업(예정)자 및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과정 강사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외국인(한국어능통자) <input type="checkbox"/> 한국인(외국생활 유경험자)
교육시수	<input type="checkbox"/> 총 80시간(최대 10주 과정)	<input type="checkbox"/> 총 65시간 (이론50, 실습15시간)	<input type="checkbox"/> ('10)총 70시간(10일)
보수	<input type="checkbox"/> 이수제기관 배치시 시간당 3,300천원	<input type="checkbox"/> 강의료 - 내부규정에 따름	<input type="checkbox"/> 강의료 - 시간당
수료자	총 150명('10년 10개교)	-	<input type="checkbox"/> 1기 23명, 2기 30명, 3기 56명
활동분야	<input type="checkbox"/>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시범운영기관 다문화 이해강사로 활동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이해 관련 교육 강사	<input type="checkbox"/> 문화기반시설에서(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활동('09)40개교 파견

출처 : 민무숙 외(2009)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라. 교육기관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1) 대학원 운영 사례

가) 이민자 상담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 새터민 등 우리나라에서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단순히 개인의 문제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차원에서 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문화상담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졸업 후 건강가정사, 상담사 2급, 가족상담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표 3-2-5> 다문화상담학 과정

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Counseling Practicum and Case Study) 건강가정현장실습(Field Practicum for Healthy Family)	3

전공 심화	다문화상담의 이론과 기법(Theory and Practice of Multi-cultural Counseling) 다문화가족상담 및 치료(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다문화정책과 상담(Multi-cultural Policy and Counseling) 타문화이해와 상담(Cultural Ethnic Group and Counseling) 문화적소수그룹과 상담(Sub-cultural Groups and Counseling) 상담이론(Theories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부부상담(Couple Counseling)	3
교양 선택	가족복지론(Family Welfare Theory) 건강가정론(Family Life Education) 여성과현대사회(Women and Modern Society) 여성주의상담(Feminism Counseling)	3

출처 : 백석대학교, www.bu.ac.kr.

#### 나) 이민자 관련 행정·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는 외국인, 사회통합, 다문화 논의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류와 사회통합의 방향성·개념 정립, 사회통합정책의 정책방향을 학습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적합한 사회통합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민정책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민정책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대학원 이민정책의 실천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추기 위해 통계학, 사회학, 이민관계법, 이민정책학 등을 학습한다. 둘째, 문제해결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노동경제학, 범죄론 등 다양한 과목을 학습한다. 셋째,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외이민제도론, 국제이주론, 사회통합론, 다문화사회교육론, 국제이민협력론 등을 학습한다.

<표 3-2-6> 교과과정표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1	전공	고급행정학연구	3
	전공	고급이민정책한연구	3
	전공	이민관계법연구	3

III. 우리나라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2	전공	사회학연구	3
	전공	노동경제학연구	3
	전공	해외이민제도론연구	3
3	전공	국제이주론	3
	전공	사회통합론연구	3
	전공	범죄론연구	3
4	전공	다문화사회교육론	3
	전공	국제이민협력론	3
	전공	인구학연구	3
5	선택	논문 또는 6학점 이수	P
	전공	통계학	3
	전공	지방자치 행정론	3

출처 : 성결대학교, grad.sungkyul.ac.kr.

한편 국제교류와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명지대학교는 해외이주자와 유학생 증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및 노동자의 해외파견, 밀입국, 불법체류, 남·북한 경제교류 등 다양한 업종에 전문가의 필요성이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국제교류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과 관련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다양한 기업의 고급 전문인력을 배출함을 목적으로 국제교류경영전공 석사과정을 2009년 신설하고 있다.

<표 3-2-7> 국제교류경영전공 교과목

구분	교과목명
전공 12 과목	글로벌인재활성화정책론(Global Leaders Activation Policy)
	각국의 해외이주법 및 국제교류경영정책론(Emigration Act of Each Country/International Exchange & Management Policy)
	국제교류경영학개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Exchange & Management)
	국제교류문화론(International Exchange & Cultural Studies)
	국제교류정책학 (International Exchange Policy)
	국제교류영어 (English for International Exchange)
	국제물류론 (International Logistics)
출입국 관리법 (Immigration Control Act)	

해외동포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of Overseas Koreans Community) 사회다문화학 (Social & Multi-Cultural Studies) 국제결혼개론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Marriage) 국제마케팅(International Marketing)
---

출처 : 명지대학교, [www.mju.ac.kr/intro/intro.html](http://www.mju.ac.kr/intro/intro.html).

**다) 교육 관련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는 인간의 평생 배움의 본능 실현 및 다문화교육의 이해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평생다문화교육전공과 다문화교육전공을 두고 있다.

<표 3-2-8> 평생다문화교육 및 다문화교육 과정표 및 교과목

평생다문화교육과정			다문화교육과정		
이수	교과목명	학점	이수	교과목명	학점
전필	다문화교육론	2	전필	다문화교육론	2
전필	평생교육론	2	전필	다문화교육교재연구및교수법	2
전선	배움학서설	2	전선	다문화사회의이해특강	2
전선	교육자본론	2	전선	다문화교육의이론과실제	2
전선	교육미래학	2	전선	배움학서설(다문화교육과 평생교육)	2
전선	청소년교육개론	2	전선	다문화교육연구세미나	2
전선	여성교육개론	2	전선	다문화교육연구방법론	2
전선	노인교육개론	2	전선	다문화교육정책론	2
전선	인간자원개발론	2	전선	다문화교사교육론	2
전선	지역사회교육론	2	전선	다문화교육과정과프로그램개발	2
전선	평생교육경영학	2	전선	다문화교육방법과평가	2
전선	평생교육방법론	2	전선	다문화가정자녀생활지도와상담	2
전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2	전선	학교개혁과다문화교육	2
전선	원격교육활용론	2	전선	다문화교육과평생교육세미나	2
전선	직업윤리와교육	2	전선	다문화교육지도자론	2
전선	이러닝과블렌드러닝실습	2	전선	다문화사회와청소년교육	2
전선	다문화교육의이론과실제	2	전선	다문화교육과유아교육	2
전선	다문화교육현장사례연구	2	전선	다문화시민교육론	2
전선	다문화교육연구방법론	2	전선	다문화시대의인문학적성찰	2

III. 우리나라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전선	다문화교육연구세미나	2	전선	외국의다문화교육	2
전선	다문화교육정책론	2	전선	다문화사회의법과제도	2
전선	다문화가정자녀생활지도	2	전선	다문화사회의인권·평화교육	2
전선	다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	2	전선	이주민가정실태와교육문제	2
전선	다문화교육지도자론	2	전선	이중언어교육론	2
전선	다문화교육과학교육	2	전선	다문화교육의콘텐츠개발	2
			전선	다문화가정학생과의의사소통	2
			전선	문화적편견제거프로그램개발	2
			전선	다문화교육봉사와멘토링	2
			전선	다문화교육현장실습및사례연구	2

출처 : 경기대학교, web.kyonggi.ac.kr/educate.

아울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다문화교육과정은 초등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길러 우수한 자질을 가진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초등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전공 필수과목 12학점, 전공 선택과목 15학점, 논문연구 3학점 등 총 3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9> 교육과정

구분 (학점)	과목	학점	선택 구분	학기별 학점 배당						
				1	2	3	4	5	6	
전공 과정 (27)	필수 (12)	· 다문화사회의 시민교육	3		3					
		· 다문화교육연구방법론	3		3					
		· 다문화가정생활문화교육론	3			3				
		· 다문화예술교육연구	3				3			
	선택 (15) (택5)	· 다문화교육론	3	택 1	3					
		· 다문화음식문화교육	3	택 1		3				
		· 다문화예술특론	3	택 1		3				
		· 이중언어교육론	3	택 1			3			
		· 다문화예술실습	3	택 1				3		
		· 아시아지역 문화의 이해	3	택 1					3	
		· 다문화교육정책론	3	택 1						3
		· 다문화 의복 및 주거문화교육	3	택 1						
· 다문화사회와 윤리	3	택 1								

	· 한국사회의 소수자 인원 · 다문화교수-학습방법론 · 한국어교수-학습방법론	3	택 1					3	
교과학점 계(27)		27		6	6	6	6	3	
논문연구 (3)	- 논문연구 I - 논문연구 II - 논문연구 III	1 1 1					1	1	1
논문 (P/F)	· 학위논문								0
계 (30)		27 (3)		6	6	6	6 (1)	3 (1)	(1)

출처 : 광주교육대학교, www.gnue.ac.kr.

## 2) 4년제 대학 운영 사례

평택대학교에서는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연계 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계전공은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가족,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혼혈아동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에 필요한 관련 규정으로 다문화 가족복지 관련 과목 3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연계전공 이수자는 해당연계전공에서 정한 전공필수과목 6학점 과 전공 선택과목 27학점 이상 총 33학점 이상 전공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동일한 교과목에 대한 제 1전공과 연계전공간의 학점 중복인정은 2과목 6학점 이내로 하고 있다.

<표 3-2-10> 연계전공 이수 과목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시수	과목명	학점/시수
2	사회복지와 인권	3/3	가족복지실천기술론	3/3
	가족정책론	3/3	한국가족생활문화	3/3
	다문화가족미술치료	3/3	다문화근로자재활상담	3/3
	다문화청소년이해론	3/3	세계화와 국제교류	3/3

III. 우리나라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3	다문화 가족복지론	3/3	다문화 사회복지론	3/3
	다문화 가족과법	3/3	다문화가족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3
	다문화심리학	3/3	다문화갈등론	3/3
	가족상담 및 치료	3/3	다문화가족행동치료	3/3
	다문화 아동청소년지도	3/3	청소년 글로벌리더십	3/3
4	다문화사회복지현장실습(필수)	3/3	다문화이론	3/3
	한국어교육(I)	3/3	졸업논문(필수)	3
	아시아종교론	3/3	아시아 문화의 이해	3/3
			부모교육	3/3
			한국어교육(II)	3/3

출처 : 평택대학교, www.ptu.ac.kr.

3)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사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다문화 전문인력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곳은 총 8개소로 <표 3-2-11>와 같다.

<표 3-2-11> 평생교육원 전문인력 관련 강좌

연번	기관명	강좌명	지원금액 (만원)
1	경기공업대학평생교육원	두문화/언어 통번역 활동가 양성과정	500
2	금오공과대학교평생교육원	이주여성 통·번역 전문가양성과정 "이십전십"	500
3	대전대학교인적자원개발원	다문화 가정으로 찾아가는 도우미-한국어지도사	500
4	서울여자대학교평생교육원	한국어 보조교사 양성과정	500
5	안동과학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다문화 가족을 위한 "우리(안동)문화 교육사" 양성과정	500
6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다문화교육사 "민주시민역량교육"	500
7	장안대학평생교육원	다문화가정 지원 관리자 및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양성	500
8	한서대학교평생교육원	다문화 이해교육지도자(1급,2급)	500

\* 연번은 가나다 순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main.do.

## IV. 연구결과

### 1.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과 역할

#### 가.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과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다문화 가족과 관련하여 실천현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가 존재하므로,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다문화 전문인력의 유형 및 직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외국의 다문화 전문인력의 유형과 직무, 국내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국내 다문화 전문인력을 다문화가족전문가,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각의 직무에 대해 다음 <표 4-1-1>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1-1> 다문화 가족 전문인력 유형 초안

명 칭		역 할
다문화가족 전문가 (실무자, 실천가)		- 다문화가족이 국내에서 정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방문교육 지도사	한국어 지도사	- 한국어지도사 :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상담, 아동양육지원 등도 부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함
	아동양육 지도사	-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임신·출산지원, 아동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안내, 요리, 문화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한국어 교육도 부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종사함
다문화		- 법무부의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사회이해 사회통합이수를 위한

이해교육 강사	영역의 강의를 담당하는 인력 -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제공 및 편견의 해소, 상호 이해를 높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	---

전문가 집단에게 <표 4-1-1>에 제시한 전문인력의 유형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타당함이 16명으로 48.5%로 나타났고, 매우 타당함이 18.2%로 나타나, 타당하다는 견해가 66.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다문화 전문인력 집단의 유형화에는 동의하지만, 유형을 구분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각각의 유형에 대한 명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다문화 전문가와 관련 실무자의 규정 내용이 혼란스러우며, 다문화 이해강사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 필요하다는 의견, 여성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사례도 포함하여 다문화 이해강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전문인력 유형 구분에서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제안도 있었는데, 다문화가족 내 청소년 문제를 담당할 인력이 누락되었다는 의견과,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다문화 가정 내 임신, 출산, 신생아 및 아동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건강관리지도사를 포함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4-1-2> 다문화가족 전문인력 유형의 타당성 조사 결과

구 분		빈도(명)	비율(%)
다문화가족 전문인력 유형화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타당하지 않음	5	15.2
	보통	6	18.2
	타당함	16	48.5
	매우 타당함	6	18.2
	합 계	33	100.0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화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및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집단의 차이는 <표 4-1-3>에 제시하였는데, 전문가 집단 간에는 현장 전문가 집단의 평균이 3.94로 학계 전문가 집단 3.44 보다는 타당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 전체의 평균은 3.70으로 나타났다.

<표 4-1-3> 전문가 집단에 따른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화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학계전문가	16	3.44	.964	-1.553
현장전문가	17	3.94	.899	
전체	33	3.70	.92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화에 전문가 집단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 전문인력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였다. 그 이유는 다문화실천현장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증이 없다보니,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자격증이 난무하면서, 다문화 실천현장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으로 '다문화상담사' 자격증은 여성가족부와 관계없다고 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다문화상담사와 같은 자격증이 난무하니까. 그런데..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참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해요.*

*평생교육협회에서도 다문화교육사를 교육한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그건 전국 민간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주고  
그러는 건데... 일반인들은 국가자격증으로 오해하니까

저는 이 연구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을 받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두 번째로 다문화 전문인력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는데, 분류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과 기존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명칭과 동일  
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 활동  
을 하는 영역이라든지 다양하잖아요. 교사에서부터 전문 지도사, 전  
문가, 실무자, 강사 등...

지금 ABT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20개 대학에 위탁해서  
다문화 사회전문가 2급 강사 양성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2008년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2010년 두 번째로 했어요.

이주여성이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문화이  
해강사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나.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별 명칭과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

### 1) 다문화가족 전문가의 명칭과 역할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 중에서 다문화가족 전문가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타  
당성 조사 결과는 <표 4-1-4>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4-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전문가의 명칭에 대해서는

타당함과 매우 타당함이 15명으로 42.8%로 나타났고, 전혀 타당하지 않음과 타당하지 않음이 13명 37.2%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전문가’의 명칭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전문가’라는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역할에 따라 현재의 전문가, 지도사, 실무자, 상담원 등의 직무에 따른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명칭 자체보다 명칭을 규정하는 개념 정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개념 정의에 따라 명칭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다문화가족보다는 ‘이주’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다문화가족 전문가를 대신할 명칭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활동가, 다문화가족 복지사,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가, 다문화가족 전문 서포터, 다문화가족 실천전문가 등과 같은 명칭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타당함과 매우 타당함으로 응답한 사례가 14명으로 43.8%로 나타났고, 보통으로 응답한 전문가가 13명 40.6%로 나타나,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전문가의 역할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에서는 가족상담, 가정폭력상담원 등 다문화가족 상담원의 직무가 포함되어야 하며,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의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4-1-4> 다문화가족 전문가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타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다문화 가족 전문가 명칭	전혀 타당하지 않음	1	2.9
	타당하지 않음	12	34.3
	보통	7	20.0
	타당함	11	31.4
	매우 타당함	4	11.4
	합 계	35	100.0

다문화가족 전문가 역할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타당하지 않음	5	15.6
	보통	13	40.6
	타당함	8	25.0
	매우 타당함	6	18.8
	합 계	32	100.0

다문화가족 전문가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및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집단의 차이는 <표 4-1-5>에 제시하였다. 먼저 명칭의 경우 전문가 집단 간에는 현장전문가 집단의 평균이 3.42로 학계 전문가 집단 2.81 보다는 타당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 전체의 평균은 3.14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역할의 경우는 현장전문가 집단의 평균이 3.65로 학계 전문가 집단 3.27 보다는 타당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 전체의 평균은 3.47로 나타났다.

<표 4-1-5> 전문가 집단에 따른 다문화가족 전문가 명칭과 역할

분류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명칭	학계전문가	16	2.81	1.047	-1.648
	현장전문가	19	3.42	1.121	
	전체	35	3.14	1.115	
역할	학계전문가	15	3.27	.961	-1.096
	현장전문가	17	3.65	.996	
	전체	32	3.47	.983	

다문화가족전문가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제시된

내용들이 다소 모호하고, 대상 범주가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라고 하면 이 밑에 자격(실천가, 실무자)을 갖춘 이후에 몇 년 이상의 상담과 경험을 갖춰야 가능한 거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국제결혼, 노동자, 새터민 3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전문가라고 하면 결혼이민자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거 같아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을 아울러서 말을 할 때에는 3가지 파트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누락되었다는 느낌이에요.*

*다문화가족 전문가보다는 다문화가족 지원활동가, 다문화활동가, 다문화실천가 다 더 낫지 않을까요?*

## 2) 방문교육지도사의 명칭과 역할

방문교육지도사는 한국어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방문교육지도사의 명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조사결과는 <표 4-1-6>에 제시하였다. <표 4-1-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방문교육지도사의 명칭에 대해서는 타당함과 매우 타당함이 25명으로 71.4%로 나타났고, 전혀 타당하지 않음과 타당하지 않음이 4명 11.5%로 나타났다.

방문교육지도사의 명칭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방문교육지도사에 한국어지도사, 아동양육지도사에 추가하여 건강관리지도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명칭이 주는 이미지가 사설 학습지 교사와 동일하게 느껴지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방문교육지도사의 명칭보다는 방문지도사,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 다문화가족현장교육사 등의 명칭을 제안하였다.

&lt;표 4-1-6&gt; 방문교육지도사 명칭의 타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방문교육 지도사 명칭	전혀 타당하지 않음	1	2.9
	타당하지 않음	3	8.6
	보통	6	17.1
	타당함	20	57.1
	매우 타당함	5	14.3
합 계		35	100.0

방문교육지도사의 명칭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및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집단의 차이는 <표 4-1-7>에 제시하였다. 전문가 집단 간에는 학계전문가 집단의 평균이 3.75로 현장 전문가 집단 3.68 보다는 타당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 전체의 평균은 3.71로 나타났다.

&lt;표 4-1-7&gt; 전문가 집단에 따른 방문교육지도사의 명칭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학계전문가	16	3.75	.856	.206
현장전문가	19	3.68	1.003	
전체	35	3.71	.926	

### 3) 한국어지도사의 명칭과 역할

먼저 <표 4-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문가 집단은 한국어지도사의 명칭에 대해서는 타당함과 매우 타당함이 24명으로 72.8%로 응답하였고, 타당하지 않음이 4명 12.1%로 응답하였다. 한국어지도사의 명칭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언어'로서의 한국어만이 아닌, '한국문화이해'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어지도사 명칭보다는 다문화가족 한국어지도사의 명칭이 더 적절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두 번째로 한국어지도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타당함과 매우 타당함으로 응답한 사례는 23명, 65.7%로 나타났고, 타당하지 않음이 6명 17.1%로 나타났다. 한국어지도사의 역할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이중언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어 지도사의 직무가 한국어 발음지도, 문법 강의, 일상회화 지도, 은어 및 속담, 관용 표현 등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실천현장에서 한국어지도사가 아동양육지도, 가정생활상담까지 병행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지도사가 아동양육 등의 직무를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방문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을 하는 한국어지도사가 있으므로, 방문교육사에 한국어지도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4-1-8> 한국어지도사 명칭과 역할의 타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한국어 지도사 명칭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타당하지 않음	4	12.1
	보통	5	15.2
	타당함	19	57.6
	매우 타당함	5	15.2
	합 계	33	100.0
한국어 지도사 직무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타당하지 않음	6	17.1
	보통	6	17.1
	타당함	18	51.4
	매우 타당함	5	14.3
	합 계	33	100.0

한국어지도사의 명칭과 역할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 및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집단의 차이는 <표 4-1-9>에 제시하였다. 먼저 명칭의 경우 전문가 집단 간에는 현장전문가 집단의 평균이 3.83으로 학계 전문가 집단 3.67 보다는 타당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 전체의 평균은 3.76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역할의 경우 전문가 집단 간에는 현장전문가 집단의 평균이 3.74로 현장 전문가 집단 3.50 보다는 타당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 전체의 평균은 3.63으로 나타났다.

<표 4-1-9> 전문가 집단에 따른 한국어지도사의 명칭과 역할

분류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명칭	학계전문가	15	3.67	1.047	-.544
	현장전문가	18	3.83	.707	
	전체	33	3.76	.867	
역할	학계전문가	16	3.50	1.033	-.736
	현장전문가	19	3.74	.872	
	전체	35	3.63	.942	

한국어지도사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실천현장에서 한국어지도사가 부가적으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법, 가족상담, 자녀양육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한국어지도사의 역할은 한국어교육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어교육을 시키다보면, 수강생들이 선생님과 친하게 되니까.. 이런 저런 상담을 하게 되요.. 아이들 키우는 문제부터.. 남편하고 싸운 이야기... 등 등.. 그런데 한국어지도사는 주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이니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상담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정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연락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아직은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기는 해요..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니까... 이 분들이(한국어지도사) 부부상담도 해야 하고요. 한

국에 대한 법률상담도 해야 하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국어강사라도 해서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상담까지 하셨나 봐요..

#### 4) 아동양육지도사의 명칭과 역할

먼저 <표 4-1-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양육지도사의 명칭에 대해서는 타당함이 23명으로 67.6%로 나타났고, 타당하지 않음이 2명 5.9%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지도사의 명칭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자녀양육지도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지도사 등의 명칭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아동양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타당함과 매우 타당함으로 응답한 사례는 22명, 64.7%로 나타났고, 타당하지 않음이 2명 5.9%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지도사의 역할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한국어지도의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아동양육지도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4-1-10> 아동양육지도사 명칭과 역할의 타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아동양육 지도사 명칭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타당하지 않음	2	5.9
	보통	9	26.5
	타당함	20	58.8
	매우 타당함	3	8.8
합 계		34	100.0
아동양육 지도사 직무	전혀 타당하지 않음	-	-
	타당하지 않음	2	5.9
	보통	10	29.4
	타당함	19	55.9
	매우 타당함	3	8.8
합 계		34	100.0

아동양육지도사의 명칭과 역할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 및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집단의 차이는 <표 4-1-11>에 제시하였다. 먼저 명칭의 경우 전문가 집단 간에는 현장전문가 집단의 평균이 3.78로 학계 전문가 집단 3.68 보다는 타당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 전체의 평균은 3.71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역할의 경우 전문가 집단 간에는 현장전문가 집단의 평균이 3.84로 현장 전문가 집단 3.47 보다는 타당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 전체의 평균은 3.68로 나타났다.

<표 4-1-11> 전문가 집단에 따른 아동양육지도사의 명칭과 역할

분류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명칭	학계 전문가	16	3.63	.885	-.613
	현장전문가	18	3.78	.548	
	전체	34	3.71	.719	
역할	학계 전문가	15	3.47	.743	-1.525
	현장전문가	19	3.84	.688	
	전체	34	3.68	.727	

아동양육지도사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현재 실천 현장에서 아동양육지도사가 부가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전문인력을 유형화할 때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 아동양육지도사가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보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여성들이 몸만 어른이지.. 생각은 아직 유아예요.. 임신, 출산, 이런 교육도 받은 적이 거의 없고..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아직 어리고. 한참 멧부리고. 놀러다닐 나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좀 안됐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

라요.. 양육지도사가 가면 애를 맡기고 좀 쉬고 싶어하고... 양육지도사도 언어소통이 잘 안되니까... 가르치기가 어렵고...

### 5)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명칭과 역할

먼저 <표 4-1-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명칭에 대해서는 타당함, 매우 타당함으로 응답한 18명으로 56.3%로 나타났고, 타당하지 않음, 전혀 타당하지 않음이 8명 25%로 나타났다.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명칭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사회통합교육강사, 다문화전문강사, 다문화전문교육가, 다문화교육강사, 다문화사회전문가, 다문화이해교육사, 다문화교육전문가 등을 제안하였다. 사회통합교육강사를 제안한 전문가는 한국 국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다문화사회를 위해서 한국국민과 이주민 모두 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하므로, 사회통합교육강사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타당함과 매우 타당함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24명, 72.7%로 나타났고, 타당하지 않음과 전혀 타당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전문가는 6명 18.2%로 나타났다.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역할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모든 국민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없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행정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문화강사로 활동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4-1-12>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명칭과 역할의 타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다문화이해 교육강사의 명칭	전혀 타당하지 않음	1	3.1
	타당하지 않음	7	21.9
	보통	6	18.8
	타당함	15	46.9
	매우 타당함	3	9.4
	합 계	32	100.0

다문화이해 교육강사의 직무	전혀 타당하지 않음	1	3.0
	타당하지 않음	5	15.2
	보통	3	9.1
	타당함	20	60.6
	매우 타당함	4	12.1
	합 계	34	100.0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명칭과 역할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 및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집단의 차이는 <표 4-1-13>에 제시하였다. 먼저 명칭의 경우 전문가 집단 간에는 학계전문가 집단의 평균이 3.44로 현장 전문가 집단 3.31 보다는 타당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 전체의 평균은 3.38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역할의 경우 전문가 집단 간에는 학계전문가 집단의 평균이 3.81로 현장전문가 집단 3.47보다는 타당성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 집단 전체의 평균은 3.68로 나타났다.

<표 4-1-13> 전문가 집단에 따른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명칭과 역할

분류	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명칭	학계전문가	16	3.44	1.094	.335
	현장전문가	16	3.31	1.014	
	전체	32	3.38	1.040	
역할	학계전문가	16	3.81	1.047	.987
	현장전문가	17	3.47	.943	
	전체	33	3.68	.727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명칭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존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명칭과 동일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금 ABT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20개 대학에 위탁해서 다문화 사회전문가 2급 강사 양성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2008년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2010년 두 번째로 했어요.

이주여성이 다문화이해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문화이해강사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다.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과 역할(안)

외국의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다문화 전문 인력의 유형과 역할에 관한 델파이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바탕으로,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과 역할<sup>2)</sup>을 아래 <표 4-1-14>과 같이 제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 전문인력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한국어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의 경우 방문교육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집합교육도 이루어지므로 방문교육지도사라는 유형은 삭제하고, 다문화가족전문가, 한국어지도사, 아동양육지도사,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 2) 다문화가족 전문인력 유형 초안

명칭		역할
다문화 가족 전문가 (실무자 실천가)		- 다문화가족이 국내에서 정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인력
방문교육 지도사	한국어 지도사	- 한국어지도사: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상담, 아동양육지원 등도 부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중시함
	아동 양육 지도사	-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임신·출산지원, 아동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안내, 요리, 문화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한국어 교육도 부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중시함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 법무부의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사회이해 사회통합이수를 위한 영역의 강의를 담당하는 인력 -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제공 및 편견의 해소, 상호 이해를 높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등으로 4가지 유형으로 하였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전문가의 경우 다문화가족실천자, 실무자, 현장전문가, 다문화활동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으나, '다문화가족전문가'라는 명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다문화가족전문가로 하였다. 역할은 연구자가 제시한 부분이 비교적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변경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한국어지도사의 경우는 명칭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대로 한국어지도사로 하였다. 반면에 역할의 경우는 방문교육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지도사가 한국어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상담이나 아동양육지도를 부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실제로 이러한 요구가 있다고 해도, 역할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부분은 삭제하였다.

네 번째로 아동양육지도사의 경우는 명칭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대로 아동양육지도사로 하였다. 반면에 역할의 경우는 방문교육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아동양육지도사가 아동양육지도 이외에 부가적으로 한국어교육도 부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실제로 이러한 요구가 있다고 해도, 역할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부분은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이해 교육강사는 연구자가 제시한 명칭과 역할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변경된 사항이 없다.

<표 4-1-14> 다문화가족 전문인력 유형 및 역할(안)

명 칭	역 할
다문화가족 전문가	다문화가족이 국내에서 정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인력

한국어지도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거나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아동양육 지도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거나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임신·출산지원, 아동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안내, 문화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제공 및 편견의 해소, 상호 이해를 높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임

## 2. 다문화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 가. 다문화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조사결과

#### 1)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에 따른 자격 조건

##### 가) 다문화가족 전문가의 자격조건

다문화가족전문가의 자격조건은 학력수준과 기존의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전공 및 국가자격증 소지여부로 조사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족전문가의 학력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는 <표 4-2-1>에 제시하였듯이, 4년제 대학 졸업이 1순위 19명, 51.35%, 2순위 12명, 3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은 1순위와 2순위 합계한 경우 31.43%로 나타났고, 2년제 대학 졸업은 1순위와 2순위 합계한 경우 18.57%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전문가와 자격조건으로 대학에서의 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사가 1순위 19명 54.29%, 2순위 16명 44.44% 합계 49.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가정사가 1순위 14명 40.00%, 2순위 15명 41.67% 합계 40.8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lt;표 4-2-1&gt; 다문화가족전문가의 자격 조건

분류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력	고졸	3	8.11	1	3.03	4	5.71
	2년제 대학 졸	5	13.51	8	24.24	13	18.57
	4년제 대학 졸	19	51.35	12	36.36	31	44.29
	대학원 졸	10	27.03	12	36.36	22	31.43
	합계	37	100.00	33	100.00	70	100.00
자격증	건강가정사	14	40.00	15	41.67	29	40.85
	사회복지사	19	54.29	16	44.44	35	49.30
	보육교사	1	2.86	3	8.33	4	5.63
	청소년지도사	1	2.86	2	5.56	3	4.23
	합계	35	100.00	36	100.00	71	100.00

다문화가족전문가의 자격조건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기보다는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인력의 대상으로는 기존의 다문화가족과 관련 전공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집단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공과 무관하게 학력수준만 충족된다면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의견은 새로운 자격증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에게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른 의견으로는 다문화 실천현장의 특성상 전공이나 자격증으로 제한하지 말고, 4년제 대학 졸업과 같은 학력조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기존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전문인력으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장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별도의 자격증 보다는.. 기존의 자격증을 활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회복지사가 있겠죠? 기존에는 건강가정사.. 그 다음에는 가정폭력상담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추가 교육이죠.

다른 자격증.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없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한다. 사회복지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일단은 누군가를 케어하고 특별히 약자에 대한 생각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되기에 일반사람들보다 다가가기 쉽다 라고 생각한다. 또 건강가정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문화가족 관련한 그 시부모, 부부관계 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문화가족사를 따로 두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영역에 따라서 100시간 150시간 과정의 필수 참여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받도록 하고

만약에 어떤 대학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결론적으로 우선을 딱 한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은 어이가 없다 생각한다. 이주민을 이해하는 문제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지금 이런 왜 한국사회가 지금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국제 이주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 부분과 더불어 이민자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격증. 학과. 전공 이런 분야에 치중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에 새롭게 다문화가 이슈와 되면서 연구도 활동도 하고 다문화에 대한 시각과 이해를 넓혀 가고 있는데 교과목을 얼마큼 들었느냐? 몇 시간을 받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의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선 다른 어떤 구분에서 다른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논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존에 이미 다문화 쪽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의 경력은 인정해야 할 듯해요. 자원봉사도 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2~3년 경력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문화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 나) 한국어지도사의 자격조건

먼저 한국어지도사의 학력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는 <표 4-2-2>에 제시하였듯이, 4년제 대학 졸업이 1순위 27명, 71.05%, 2순위 5명, 1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2년제 대학 졸업이 1순위와 2순위 합계한 경우 34명, 31.58%로 나타났고, 대학원 졸업은 1순위와 2순위 합계한 경우 15명 19.74%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한국어지도사의 자격조건으로 대학에서의 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교원이 1순위 17명 47.22%, 2순위 9명 25.71 합계 3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사가 1순위 7명 19.44%, 2순위 11명 31.43% 합계 25.3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초중등교원이 1순위 8명 22.11%, 2순위 4명 11.43% 합계 12명 16.90%로, 건강가정사 1순위 4명 11.11%, 2순위 8명 22.86% 합계 12명 16.90%와 동일하게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2> 한국어지도사의 자격 조건

분류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력	고졸	5	13.16	0	0.00	5	6.58
	2년제 대학 졸	5	13.16	19	50.00	24	31.58
	4년제 대학 졸	27	71.05	5	13.16	32	42.11
	대학원 졸	1	2.63	14	36.84	15	19.74
	합계	38	100	38	100	76	100
자격증	건강가정사	4	11.11	8	22.86	12	16.90
	사회복지사	7	19.44	11	31.43	18	25.35
	보육교사	0	0.00	3	8.57	3	4.23
	청소년지도사	0	0.00	0	0.00	0	0.00
	초중등교원	8	22.22	4	11.43	12	16.90
	한국어교원	17	47.22	9	25.71	26	36.62
	합계	36	100.00	35	100.00	71	100.00

한국어지도사 자격조건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초중등교원 등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보다는 기존의 국어기본법에 한국어교원 1급, 2급, 3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수강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금 법에 의해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자격증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어를 말 할 수 있는 것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교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분들이 한국어교육을 시키기는 글썽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다문화에 대해 좀 알아야 할 거 같아요. 중략... 이 분들이(한국어지도사) 부부상담도 해야 하고요. 한국에 대한 법률상담도 해야 하고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국어강사라도 해서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상담까지 하셔야 해요..*

#### 다) 아동양육지도사의 자격조건

먼저 아동양육지도사의 학력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는 <표 4-2-3>에 제시하였듯이, 1순위는 4년제 대학 졸업이 21명 55.26%, 2순위는 2년제 대학 졸업이 19명, 5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의 합계의 경우는 2년제 대학 졸업이 27명, 3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대학 졸업이 27명 36%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아동양육지도사의 자격조건으로 대학에서의 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육교사가 1순위 16명 44.44%, 2순위 6명 44.44%, 1순위와 2순위 합계 32명 4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가 13명 36.11%, 2순위 11명 30.56% 합계 33.33%로 나타났

고, 건강가정사가 1순위 6명 16.67%, 2순위 7명 19.44% 합계 18.06%로 나타났다.

<표 4-2-3> 아동양육지도사의 자격 조건

분류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력	고졸	5	13.16	3	8.11	8	10.67
	2년제 대학 졸	9	23.68	19	51.35	28	37.33
	4년제 대학 졸	21	55.26	6	16.22	27	36.00
	대학원 졸	3	7.89	9	24.32	12	16.00
	합계	38	100.00	37	100.00	75	100.00
자격증	건강가정사	6	16.67	7	19.44	13	18.06
	사회복지사	13	36.11	11	30.56	24	33.33
	보육교사	16	44.44	16	44.44	32	44.44
	청소년지도사	1	2.78	2	5.56	3	4.17
	합계	36	100.00	36	100.00	72	100.00

아동양육지도사 자격조건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아동 발달과 양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기존의 보육교사, 유아원 교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주여성들과 남편이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고, 주변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나누고 도움을 줄 사람들도 별로 없으므로, 아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동양육지도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아동양육지도사의 경우 전직교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자, 기타 사회 활동가 및 전문자원, 봉사자 등이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전문가들은 아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환경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발달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동생이 태어나거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어린이집에 처음 가거나.. 등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아동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다문화이해교육강사의 자격조건**

먼저 다문화이해교육강사의 학력 조건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는 <표 4-2-4>에 제시하였듯이, 4년제 대학 졸업이 1순위 18명, 50.00%, 2순위 14명, 48.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은 1순위와 2순위 합계한 경우 25명, 38.46%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다문화이해교육강사의 자격조건으로 대학에서의 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사가 1순위 19명 54.29%, 2순위 16명 44.44% 합계 49.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가정사가 1순위 14명 40.00%, 2순위 15명 41.67% 합계 40.8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4> 다문화이해교육강사

분류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력	고졸	1	2.78	1	3.45	2	3.08
	2년제 대학 졸	2	5.56	4	13.79	6	9.23
	4년제 대학 졸	18	50.00	14	48.28	32	49.23
	대학원 졸	15	41.67	10	34.48	25	38.46
	합계	36	100.0	29	100.0	65	100.0
자격증	건강가정사	9	25.71	8	23.53	17	24.64
	사회복지사	16	45.71	8	23.53	24	34.78
	보육교사	1	2.86	2	5.88	3	4.35
	청소년지도사	2	5.71	6	17.65	8	11.59
	초중등교원	6	17.14	7	20.59	13	18.84
	한국어교원	1	2.86	3	8.82	4	5.80
	합계	35	100.00	34	100.00	69	100.00

다문화이해교육강사의 자격조건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특정한 전공이나 자격증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다문화 관련 실천현장에서 2~3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ABT대학에서 다문화 사회전문가 2급 강사 양성과정을 올해 두 번째로 했는데,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그 활동가들이 많이 오셨어요. 10개 대학에서 150명을 양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법무부는 2년제 전문대 줄 이상이에요. 이 교육의 신청 자격이요. 저희가 사실 15명을 뽑을 때 50명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분들 어떻게 되게.. 고민들이 돼서.. 계속 이 일을 이룸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뽑았어요.*

## 2)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별 교육훈련기관

### 가) 다문화가족전문가의 교육훈련기관

다문화가족전문가를 교육·훈련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는 <표 4-2-5>에 제시하였듯이,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1순위 19명, 50.00%, 2순위 13명, 36.11%, 합계 32명 4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 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등 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순위 16명 42.11%, 2순위 6명 16.67%, 합계 22명 29.73%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평생교육기관으로 응답한 전문가의 합계는 10명 13.5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2-5> 다문화가족전문가 교육훈련기관

분류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학(사이버대, 학점은행제 포함)	16	42.11	6	16.67	22	29.73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19	50.00	13	36.11	32	43.24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	2.63	9	25.00	10	13.51
평생교육기관	2	5.26	8	22.22	10	13.51
합계	38	100.00	36	100.00	74	100.00

다문화가족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대한 결과는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에서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대학에서 학점취득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무래도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이 좋겠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앙센터이고, 방문교육지도사도 이미 교육하고 있으니까요.*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것은 커리큘럼을 변경해야 하니까, 쉽지가 않고..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좋겠어요.*

*전문성을 가지려면 대학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거 같기는 해요.. 쉽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전공을 개설해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현재 대학원에서는 평택대라든가, 백석대에서 다문화 관련 전공이 생기는 했어요.. 근데 학부에서는 아직... 전공을 개설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사 같은 자격증도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에서 학점이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 나) 한국어지도사의 교육훈련기관

한국어지도사를 교육·훈련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는 <표 4-2-6>에 제시하였듯이, 1순위와 2순위 합계의 경우 일반 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 행제 등을 포함한 대학과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24명, 34.78%로 공동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순위별로 살펴보면 1순위는 대학이 15명 40.54%로,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11명 29.73%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2순위는 전국다문

화가족사업지원단이 13명 40.63%로, 대학 9명, 28.13%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도 1순위와 2순위 합계하여 16명 23.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2-6> 한국어지도사 교육훈련기관

분류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학(사이버대, 학점은행제 포함)	15	40.54	9	28.13	24	34.78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11	29.73	13	40.63	24	34.78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	5.41	3	9.38	5	7.25
평생교육기관	9	24.32	7	21.88	16	23.19
합계	37	100.00	32	100.00	69	100.00

한국어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대한 결과는 대학이나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높게 나타난 설문조사결과와는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어교육은 국어나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기까, 현행처럼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사업단에서는 자격을 가진 한국어교원에 대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정도를 몇 시간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단은 다문화에 전문성이 있지, 한국어교육에는 전문성이 없으니까요

#### 다) 아동양육지도사 교육훈련기관

아동양육지도사를 교육·훈련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는 <표 4-2-7>에 제시하였듯이,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1순위 14명 37.84%, 2순위 11명 32.35%, 합계 25명 3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포함한 대학이 1순위 14명 37.84%,

2순위 7명 20.59% 합계 21명 29.58%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합계 13명 18.31%, 평생교육기관은 합계 12명 16.90%로 나타났다.

<표 4-2-7> 아동양육지도사 교육훈련기관

분류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학(사이버대, 학점은행제 포함)	14	37.84	7	20.59	21	29.58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14	37.84	11	32.35	25	35.21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4	10.81	9	26.47	13	18.31
평생교육기관	5	13.51	7	20.59	12	16.90
합계	37	100.00	34	100.00	71	100.00

아동양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대한 결과는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높게 나타난 설문조사결과와는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어교육은 국어나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현행처럼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사업단에서는 자격을 가진 한국어교원에 대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정도를 몇 시간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단은 다문화에 전문성이 있지, 한국어교육에는 전문성이 없으니까요

#### 라) 다문화이해교육강사

다문화이해교육강사를 교육·훈련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는 <표 4-2-8>에 제시하였듯이, 일반 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포함한 대학이 1순위 19명 51.35%, 2순위 7명 20.00% 합계 26명 3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 1순위 15명 40.54%, 2순위 10명 28.57%, 합계 25명 34.7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 합계 12명 16.67%,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합계 9명 12.50%로 나타났다.

<표 4-2-8> 다문화이해교육강사 교육훈련기관

분류	1순위		2순위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학(사이버대, 학점은행제 포함)	19	51.35	7	20.00	26	36.11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15	40.54	10	28.57	25	34.7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1	2.70	8	22.86	9	12.50
평생교육기관	2	5.41	10	28.57	12	16.67
합계	37	100.00	35	100.00	72	100.00

### 3)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별 교육 내용 및 시간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별 교육내용은 설문조사의 경우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만 조사하였다.

#### 가) 다문화가족전문가 양성교육 내용 및 시간

다문화가족전문가의 경우 최소한 100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족전문가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인력이므로, 사회에 대한 이해 즉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의 이해,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게 된 국제 사회 및 경제의 이해 등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니까 아무래*

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겠죠.. 특히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 관련법, 정책 및 제도 등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0시간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문화 여성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들이예요. 본인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는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굉장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의지와 추진력 이러한 자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적극 개발해주어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전문가는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나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겠죠.. 특히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 관련법, 정책 및 제도 등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학에서 교육시킨다면 3과목에서 5과목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전문가는 이민자가 한국인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적응하는 것을 도와야 하므로, 이민자의 모국 사회에 대한 이해, 이민자의 모국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여성들이 살아온 나라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 문화가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전문가가 이주여성의 모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서

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죠. 또 20년 넘게 살아온 배경이 있는데, 갑자기 한국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도 힘들고.. 이들도 자신이 살아온 나라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의 문화는 다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대주의가 있는 반면에,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들의 모국과 그들의 문화는 무조건 우리 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전문가는 실천현장에서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처가 필요하므로, 이민자 상담기법, 다문화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 및 가족생활적응, 다문화가족 여성의 자립지원, 현장실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문화가족은 다른 가족들보다 처음부터 극복해야 할 문제를 하나 가지고 출발하는 거니까,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일반 가정보다 더 많은 상담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문화가족 전문가는 다문화가족 상담과 사례관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별로 없지만.. 한국에 온지 몇 년 지난 여성들은 취업하고 싶어해요..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모국에도 송금할 수 있으니까.. 또 대부분 이주여성이 결혼한 남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이 아니니까.. 한국에서 살려면.. 맞벌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취업이 잘 안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꼭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실습을 해야, 현장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니까요. 그냥 동경심만 가지고, 현장으로 바로 투입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도 힘들고, 대상자들도 힘들어지니까요. 특히 다문화현장은 다른 실천현장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니까, 현장실습은 시간을 줄여서라도 꼭 해야 합니다.

#### 나) 한국어지도사의 양성교육 내용 및 시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지도사 양성교육 교육내용으로 크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교수방법, 다문화가족상담 등의 3가지 영역으로 조사되었고, 교육시간은 30시간에서 50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먼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의 이해,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게 된 국제 사회 및 경제의 이해, 관련 법률의 이해 등이 내용을 포함한다. 관련 법률은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다.

한국어만 가르치는게 아니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여기 저기서 들은 건 많지만.. 막상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건 별로 없으니까.. 이런거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한국어에 대한 전문성, 교수방법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고.. 고급언어를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얼마가 고급언어를 써야..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데...그게 좀 어려운거 같아요...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육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이/가', '은/는'을 어떻게 쓰는지 그냥 알게 되는데.. 문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니까... 국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도사와 이주여성이 자연스럽게 유대가 형성되면, 이주여성이 다양한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므로, 가족관계, 가족갈등 등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 가족상담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어 가르치다가.. 이런 저런 상담도 하게 되요..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를 잘 모르니까.. 사소한 것도 모르니까.. 하도 못해 동사무소가서 서류하나를 못 떠니까...그런거부터.. 가르치다보면.. 한국어는 뒷전이고.. 이럴 때는 좀 아쉽죠.. 힘들게 운전해서 갔는데.. 한국어 공부는 얼마 못 하게 되니까.. 그래도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거니까..

교육시간은 한 50시간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못해도 30시간 이상은 해야 합니다.

#### 다) 아동양육지도사 양성교육 내용 및 시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아동양육지도사 양성교육 교육내용으로 크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아동발달 및 상담, 가족상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교사로서의 자질함양교육 등 4가지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시간은 50시간에서 100시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먼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의 이해,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게 된 국제 사회 및 경제의 이해, 관련 법률의 이해 등이 내용을 포함한다. 관련 법률은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다.

뉘를 좀 알아야 하니까..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동사무소 갈

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도 알아야하고.. 이주여성들은 말이 안 되니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도 모르면.. 안되니까.. 선생님들이 좀 알아야 할거같요.. 법이나.. 혜택 그런거요.. 교육시간은 모두 한 100시간 너무 많나요.. 아무튼 100시간 가까이가 좋을듯해요

두 번째로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양육하게 되므로,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및 대처기술, 아동상담에 대한 이론과 기술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이들 돌보다보면..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심리치료 그런거 아니 놀이치료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요. 애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거는 파악해야 하니까.. 내가 직접 치료하지는 못 해도..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고.. 그럴 때 아동상담 공부가 좀 필요하구나.. 이주여성들이 잘 모르니까.. 나이도 어리고 애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도사들이 보고.. 알려줘야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애매한 애들이 좀 있거든요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 여성과 남편, 시부모 등 가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가족관계, 가족갈등 등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 가족상담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은 집이 있거든요.. 이럴때는 가족상담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대화로 문제도 해결해주거든요, 고부갈등 같은거요.. 서로 감정이 안 좋으면 중재도 하고..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나 싶을때가 있어요.. 우리끼리(지도사)는 서로 의논하고.. 상담 내용도 서로 토론하고 하는데.. 공부를 좀 더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맨날 가면... 시어머니한테 이해하라고 참으라고... 이쁘게 봐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어머니들이 화가 났다가도.. 내 얘기 듣고 풀어지고 풀어지고....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어떨 땐 이주여성보다 시어머니하고 더 오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시어머니가 편안해져야.. 이주여성도 편안해지니까요. 교육시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고, 보수교육도 계속 해주면 좋겠고.. 암튼 저는 배우는거 좋아해요. 80시간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 여성의 다양한 욕구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네트워크, 즉 자원동원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도사 능력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게 다른 거 같아요. 저는 여기 저기 얻은 정보로 정말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어떨 때 동사무소, 어떨 땐 보건소.. 병원 등.. 가끔 나한테 배우는 얘기엄마들이 고마워해요.. 다른 이주여성들하고 이야기 나누다보면.. 내가 준 정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런 때 기분이 좋죠..

저는 평소에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주여성들을 많이 도와주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샘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저는 그 걸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해 주지 못하니까.. 내가 못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마지막으로 아동양육지도사는 방문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교사로서의 자질함양교육, 봉사정신 등과 같은 교사로서의 역할과 자질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동양육지도사는 봉사정신이 필요해요.. 페이(pay)도 적고.. 이동 거리도 멀고.. 정말 미치지 않으면 못 해요.. 일하는 보람을 느끼니까.. 하는 거죠*

*교사니까.. 교사 마인드.. 자질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지도사들이 자질이 향상 되어 되요..*

#### **라)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교육 내용 및 시간**

다문화이해교육강사는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의 이해,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게 된 국제 사회 및 경제의 이해,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이해, 이민자의 모국 사회에 대한 이해, 사회통합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시간은 30시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장에서 몇 년 일해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이주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주여성들이 왜 결혼이라는 모험을 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또 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혜택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물 안 개구리라서.. 우리만 잘 난줄 알죠? 근데 우리 젊은 여성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거 같아요.. 이런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시간은 20시간에서 50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 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모형(안)

### 1) 다문화가족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 가) 건강가정사 활용방안 : 다문화가족 전문 건강가정사

기존의 가족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인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먼저 건강가정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다문화가족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도록 하면 방법이 있는데, <표 4-2-9>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추가로 수강해야 하면 교과목은 다문화사회이해(3학점), 다문화가족복지정책(3학점), 다문화가족상담 및 실습(3학점) 등이며, 이미 건강가정사를 취득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위의 3과목 9학점을 이수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한 기관(ex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에서 다문화가족 전문 건강가정사로 인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관련기관에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은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다문화사회이해, 다문화가족복지정책, 다문화가족상담 및 실습 등을 내용으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17조, 18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규로 채용된 사회복지사(1급)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야 상담원 업무를 시작할 있도록 하였다.

#### □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하는 방법

<표 4-2-9> 다문화가족 전문 건강가정사 : 대학 교육

분 류	내 용
자격 기준	건강가정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 기관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포함)

교육 내용 3과목 9학점	다문화사회이해 (3학점)	1. 국제사회의 이해 2. 한국이민정책의 역사와 미래 3. 중국과 동남아시아 문화 이해 4.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관
	다문화가족복지 정책(3학점)	1. 이민자를 위한 생활법률과 이민관계법 이해 2. 다문화가족복지정책
	다문화가족상담 및 실습(3학점)	1. 다문화가족복지 프로그램 2. 다문화가족 상담 3.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에서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으로 위의 3과목, 9학점을 취득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한 기관(ex: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에서 다문화가족 전문 건강가정사로 인증함</li> <li>- 이미 건강가정사를 취득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위의 3과목 9학점을 이수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한 기관(ex: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에서 다문화가족 전문 건강가정사로 인증함</li> </ul>	
활용방법	다문화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상담기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기관, 다문화가족 쉼터, 다문화가족 시설 등의 종사자로 채용함	
관련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장점	다문화가족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이므로, 기존의 가족전문가인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점이 신규로 자격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임	
단점	건강가정사 교육에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을 추가하게 되므로, 가족전문가의 성격이 강하여, '다문화' 전문성은 부족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입직원 교육연수를 활용하는 방법

<표 4-2-10> 다문화가족전문 건강가정사 : 신입직원 교육

분 류	내 용
자격 기준	건강가정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 기관	여성가족부 위탁 기관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 여성정책연구원 등	
교육 내용 100시간	다문화사회이해 (30시간)	1. 국제사회의 이해 2. 한국이민정책의 역사와 미래 3. 중국과 동남아시아 문화 이해 4.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관
	다문화가족복지정책 (30시간)	1. 이민자를 위한 생활법률과 이민관계법 이해 2. 다문화가족복지정책
	다문화가족상담 및 실습(40시간)	1. 다문화가족복지 프로그램 2. 다문화가족 상담 3.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
운영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 관련기관)에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은 위의 100시간 이수 후 근무 시작하도록 함	
관련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점	다문화가족도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이므로, 기존의 가족전문가인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취업한 자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하므로, 현장실무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점	신입직원 채용 후에 단기간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므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	
유사한 제도	아동복지법 17조, 18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규로 채용된 사회복지사(1급)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10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야 상담원 업무를 시작할 있도록 함	

#### 나) 신규 국가자격제도 개설 방안 : 다문화가족 전문가

다문화가족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신규로 국가자격제도를 개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신규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10과목 30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운영방법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 '다문화가족' 학과를 개설하는 방법과,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학, 법학 등 관련 전공이 연계하여 연계

전공 또는 협동과정으로 '다문화가족'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다.

다문화가족전문가에 대한 국가 자격증을 신규로 개설하면, 심도 깊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장점 있다. 반면에 기존의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유사한 분야의 국가자격증과 중복된다는 점, 다문화가족 실천현장의 수요보다 공급이 커져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표 4-2-11> 국가자격제도 신설 : 다문화가족전문가 양성교육

분 류	내 용
교육 기관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포함)
교육 내용 10과목 30학점	다문화사회이해(3학점)
	다문화가족복지정책 (3학점)
	다문화가족상담(3학점)
	세계화와 국제교류(3학점)
	타문화 이해와 상담(3학점)
	이민정책 및 법(3학점)
	다문화가족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3학점)
	다문화 아동, 청소년 교육(3학점)
	다문화가족 조사방법론(3학점)
다문화가족 현장실습(3학점)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에서 '다문화가족' 학과 개설하여, 위의 10과목 이수한 경우에 다문화가족사(국가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함</li> <li>- 대학에서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학, 법학 등 관련 전공이 연계하여 연계전공 또는 협동과정으로 '다문화가족'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함</li> </ul>

활용방법	다문화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상담기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기관, 다문화가족 센터, 다문화가족 시설 등의 종사자로 채용함
관련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점	신규 자격증을 개설하면, 심도 깊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음
단점	기존의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유사한 분야의 국가자격증과 중복된다는 점, 다문화가족 실천현장의 수요보다 공급이 커져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활용 방안

다문화가족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사를 활용하거나 신규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보다는 전문성 있는 교육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 국가자격증보다는 다문화가족 실천현장의 변화에 민첩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다문화가족 관련 학회 및 기관 등에서 다문화가족전문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원(<http://www.krivet.re.kr/ku/index.jsp>)으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인증 받도록 하는 것이다.

<표 4-2-12>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 다문화가족전문가 양성교육

분 류	내 용	
자격 기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전공 무관)	
교육 기관	민간기관	
교육 내용 100시간	다문화사회이해 (30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사회의 이해</li> <li>2. 한국이민정책의 역사와 미래</li> <li>3. 중국과 동남아시아 문화 이해</li> <li>4.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관</li> </ol>

	다문화가족복지정책 (30시간)	1. 이민자를 위한 생활법률과 이민관계법 이해 2. 다문화가족복지정책
	다문화가족상담 및 실습 (40시간)	1. 다문화가족복지 프로그램 2. 다문화가족 상담 3.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
운영방법	다문화가족 관련 학회 및 기관 등에서 다문화가족전문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함. 직업능력개발원(www.krivet.re.kr/ku/index.jsp)으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인증받음	
관련 법령	-	
장점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 국가자격증보다는 다문화가족복지 실천현장의 변화에 민첩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단점	대학교육에 비하여 전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	
유사한 제도	한국농아인협회 - 수화통역사	

## 2) 한국어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한국어지도사는 기존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다문화가족상담 등의 2가지 영역에 대하여 30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주관기관은 관련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는 먼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의 이해,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게 된 국제 사회 및 경제의 이해, 관련 법률의 이해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관련 법률은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두 번째로는 가족관계, 가족갈등 등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 가족상담 등이다.

&lt;표 4-2-13&gt; 한국어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분 류	내 용	
자격 기준	한국어교원	
교육 기관	다문화 관련 학회, 단체 기관 등의 컨소시엄	
교육 내용 30시간	다문화가족이해(15시간)	1. 국제 사회 및 경제의 이해 2. 다문화 가족 관련 제도 및 정책
	다문화가족상담(15시간)	1. 가족관계, 가족갈등 등 가정생활이해 2. 가족상담
운영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 관련기관)에 신규로 채용되는 한국어지도사는 30시간을 이수한 후에 근무를 시작하도록 함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3) 아동양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아동양육지도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2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교육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양성교육 교육내용으로 크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아동발달 및 상담, 가족상담,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4가지 영역이며, 각 영역별로 20시간씩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어지도사와 동일하게 교육주관기관은 관련 기관들이 컨소시엄 형성하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먼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의 이해,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게 된 국제 사회 및 경제의 이해, 관련 법률의 이해 등이 내용을 포함한다. 관련 법률은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등 이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의 아동을 양육하게 되므로,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및 대처기술, 아동상담에 대한 이론과 기술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족 여성과 남편, 시부모 등 가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가족관계, 가족갈등 등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 가족상담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네 번째는 다문화가족 여성의 다양한 욕구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 즉 자원개발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4-2-14> 아동양육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분 류	내 용	
자격 기준	- 보육교사 - 2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자	
교육 기관	다문화 관련 학회, 단체 기관 등의 컨소시엄	
교육 내용 80시간	다문화가족이해 (20시간)	1. 국제 사회 및 경제의 이해 2. 다문화 가족 관련 제도 및 정책
	아동발달 및 상담 (20시간)	1.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2.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및 대처기술 3. 아동상담
	다문화가족상담 (20시간)	1. 가족관계, 가족갈등 등 가정생활이해 2. 가족상담
	지역사회네트워크 (20시간)	1. 지역사회네트워크 2. 자원 개발
운영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 관련기관)에 신규로 채용되는 아동양육지도사 80시간을 이수한 후에 근무를 시작하도록 함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4)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 교육과정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은 기존의 법무부에서 지정한 ABT 대학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교육 내용은 다문화 인식(awareness), 국제 사회의 이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객(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에게 교육, 행정,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이며, 교육시간은 30시간을 제안한다.

<표 4-2-15>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

분 류	내 용
자격 기준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전공 무관)
교육 기관	ABT 대학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목적	교육목적은 한국사회가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역량강화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양성하는 것임
교육 내용	다문화 인식(awareness) 국제 사회의 이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객(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에게 교육, 행정,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방법
교육 시간	30시간
활용 방법	다문화이해교육강사를 양성하여, 교원, 공무원, 의사, 간호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은행원 등의 신입 직원 교육 및 보수교육시 간문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향후 다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 현재는 다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지 못하여, 기존의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교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유한 인력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할을 규정하고, 이들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인력의 유형을 정리하고, 각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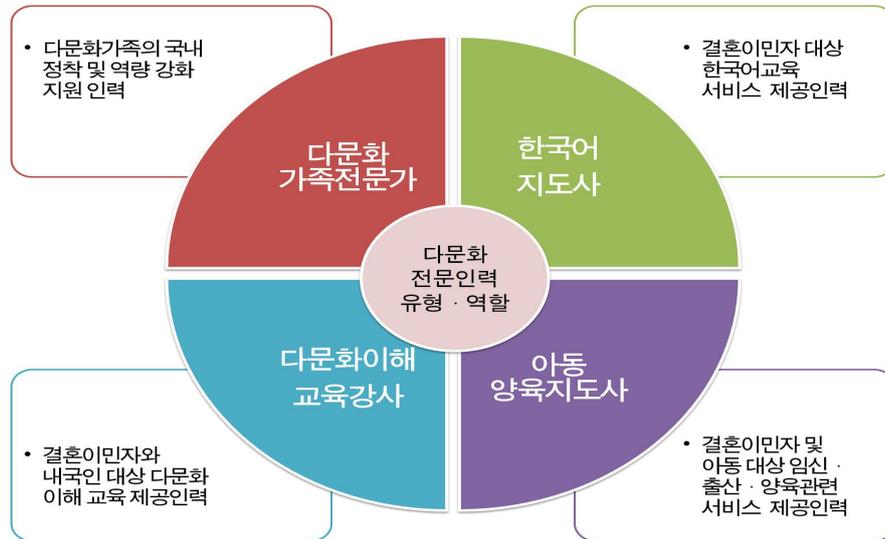
연구방법은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역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가능하므로, 델파이조사방법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38명이었고, 조사결과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t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두 13명이며, 2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content-analysis)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델파이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전문인력은 다문화가족전문가, 한국어지도사, 아동양육지도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등 4가지로 유형하였다<sup>3)</sup>. 이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전문가는 다문화가족

---

3) 다문화가족 전문인력 유형 및 역할(안)

이 국내에서 정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규정하였고, 한국어지도사는 집합교육이나 방문교육을 통해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정하였고, 아동양육지도사는 집합교육이나 방문교육을 통해 임신·출산지원, 아동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안내, 문화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규정하였고, 다문화 이해강사는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인력으로 규정하였다. 이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다문화 전문인력 유형 및 역할

명 칭	역 할
다문화가족 전문가	다문화가족이 국내에서 정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
한국어지도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거나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아동양육 지도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하거나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임신·출산지원, 아동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안내, 문화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제공 및 편견의 해소, 상호 이해를 높이기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임

이상의 다문화가족 전문인력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성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전문가는 가족복지 관련 국가자격증인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신규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자격취득이 가능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다문화가족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도록 하면 방법이 있는데, 추가로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은 다문화사회이해(3학점), 다문화가족복지정책(3학점), 다문화가족상담 및 실습(3학점) 등이며, 이미 건강가정사를 취득하고 졸업한 경우에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위의 3과목 9학점을 이수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위탁한 기관(ex: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 등)에서 다문화가족 전문 건강가정사로 인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건강가정사를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또는 다문화 관련기관에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은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다문화사회이해, 다문화가족복지정책, 다문화가족상담 및 실습 등을 내용으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신규로 국가자격제도를 개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전문가를 신규 국가자격제도로 도입하는 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신규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10과목 30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운영방법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 '다문화가족' 학과를 개설하는 방법과,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학, 법학 등 관련 전공이 연계하여 연계전공 또는 협동과정으로 '다문화가족'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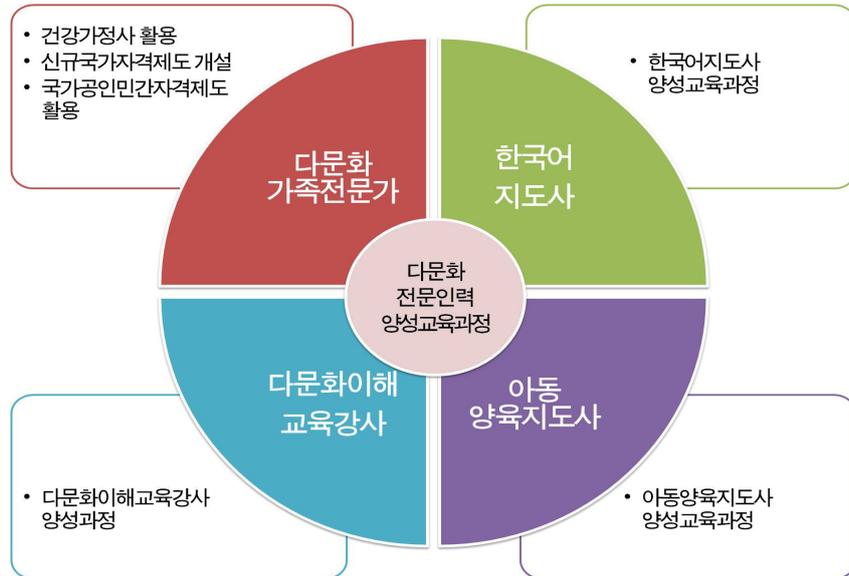
다문화가족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사를 활용하거나 신규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보다는 전문성 있는 교육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 국가자격증보다는 다문화가족복지 실천 현장의 변화에 민첩하고,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다문화가족 관련 학회 및 기관 등에서 다문화가족전문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원(<http://www.krivet.re.kr/ku/index.jsp>)으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인증받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어지도사는 기존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다문화가족상담 등의 2가지 영역에 대하여 30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주관기관은 관련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아동양육지도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2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교육을 제안한다. 양성교육 교육내용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아동발달 및 상담, 가족상담,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 4가지 영역이며, 각 영역별로 20시간씩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어지도사와 동일하게 교육주관기관은 관련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은 기존의 법무부에서 지정한 ABT 대학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교육 내용은 다문화 인식(awareness), 국제 사회의 이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고객(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에게 교육, 행정,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교육을 30시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V-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V-2]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 2. 정책적 제언

먼저, 우리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 여성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나, 이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깊고, 실질적으로 인력양성방안을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기존의 다문화 전문인력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자와 현장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양성

교육과정 개설 위원회를 설립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이 초기 적응에서부터 노년기가 될 때까지,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가 성장·발달함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활발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 시 이러한 연구결과물을 적극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주

- 1) 다문화가족법의 정의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셋으로 분류가 된다. 첫째,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또는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가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근로자가족, 셋째,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북한이탈주민(새터민)가족으로 나눈다. 본고는 첫째 분류에 해당하는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다.
- 2) 올드커머란 제국주의시대에 일본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을 말한다.
- 3) 뉴커머란 1945년 이후 일본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유학생들을 말한다.
- 4) 1990년 말의 외국인등록자수는 1,075,317명으로 19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
- 5) 주민기본대장 제도에 의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행정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 1967년에 폐지된 주민등록법을 대신해서 제정되었다.
- 6) 전국시장회, 전국시의회의장회, 전국정촌회 및 전국정촌의회의회장 4단체가 설립한 (재)전국시정촌연수재단에서는 시정촌직원을 대상으로 시정촌직원중앙연수소(시정촌아카데미; JAMP)와 전국시정촌국제문화연수소(국제문화아카데미; JIAM) 2개의 연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전국시정촌국제문화연수소(JIAM : Japan Intercultural Academy of Municipalities)는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분권형 사회를 이끌어갈 의욕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육성을 위해 다른 연수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수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7) (재)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는 1988년 7월에 설립되어 도쿄에 본부와 각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뉴욕, 런던(88년), 파리, 싱가포르(90년), 서울(93년), 시드니(94년), 북경(97년)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국제교류활동에 종사하는 국제교류원(CIR),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에서 어학지도에 종사하는 외국 언지도조수(ALT),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활동에 종사하는 스포츠국제교류원(SEA)을 각지 지방공공단체 등에 파견하는 어학지도 등을 하는 외국청년초대사업(JET프로그램), 지방공공단체의 해외 자매결연, 자매교류활동 등의 알선, 정보수집, 제공 등을 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민무숙 외 3명(2009).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08). 20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가이드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국제결혼가정지원교육전문가 심화교육안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8). 이주여성활동가 교육.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9). 이주여성활동가 교육.
-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 법무성(2009), 2009년도 등록외국인통계
- 石河久美子(2007), 外國人相談に求められる人材育成と体制の充實化. 自治体國際化フォーラム217号.
- 杉澤経子(2009). 「『多文化社會コーディネーター養成プログラム』づくりにおけるコーディネーターの省察的實踐」 『シリーズ多言語・多文化協働實踐研究 別冊1 多文化社會に求められる人材とは?』, 東京外國語大學, 多言語・多文化教育研究センター.
- 塩原良和(2010). 多文化社會コーディネーターの社會意義, 東京外國語大學, 多言語・多文化教育研究センターシリーズ多言語・多文化協働實踐研究 別冊3.
- (財)自治体國際化協會(2004). 『平成16年度市區町村國際交流協會ダイレクトリー』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Immigration Aspects 2008-09 Edition, Australia's population
- Statistic Canada(2010). Projections of the Diversity of the Canadian Population 2006 to 2031.
- [웹사이트]
- 일본 동경외국어대학 다언어 · 다문화교육연구센터  
([www.tufs.ac.jp/blog/ts/g/cemmer/2008/04/post\\_34.html](http://www.tufs.ac.jp/blog/ts/g/cemmer/2008/04/post_34.html))

- 일본 전국시정촌국제문화연수소(www.jiam.jp)  
일본 (재)지자체국제화협회(www.clair.or.jp)  
군마대학 (http://jst-tabunka.edu.gunma-u.ac.jp/)  
**Affiliation of Multicultural Societies and Services Agencies of BC**  
([www.amssa.org](http://www.amssa.org))  
**Douglas College**(www.douglas.bc.ca)  
**George Brown College**(www.georgebrown.ca)  
**Ontario Council of Agencies ServingImmigrants: OCASI**  
(www.ocasi.org)  
**Public Legal Education and Information**  
(www.legal-info-legale.nb.ca)  
**Seneca College**(www.senecac.on.ca)  
**Vancouver Colleges**(www.vccollege.ca)  
마가렛 본호스트 (www.mbcross-cultural.com.au)  
새희망재단 (www.newhope.asn.au/)  
**Victoria University** (www.vu.edu.au)  
AMSSA (www.amssa.org)  
요코하마YMCA (www.yokohamaymca.org/)  
군마현 (www.pref.gunma.jp/index.html)  
다문화공생센터오사카 (tabunka.jp/osaka/)  
NPO법인 중고등학생의 일본어지원을 생각하는 회  
(home.e07.itscom.net/maki/)

### <전문가 의견서>

최근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증가로 다문화 가족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가족복지를 전공한 학자와 다문화 가족복지 관련 현장 경험이 3년 이상된 현장전문가에게 델파이조사(전문가의견조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응답자 인적사항>

1. 현직 :
2. 학력 :
3. 교육경력:                    \_\_\_\_\_년                    개월
4. 현장실문경력:                \_\_\_\_\_년                    개월

## 1차 델파이

## &lt;다문화 가족복지 전문 인력의 유형&gt;

명칭	직 무	
다문화가족 (복지) 전문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여성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인력(실무자). -다문화가족이 국내에서 정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 -외국의 경우 정착지원서비스종사자(settlement service worker)라고 명명함.	
방문교육지도사	-결혼이민자에게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제공하는 인력. -한국어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로 구분됨. 주 업무는 한국어교육, 임신·출산지원, 아동양육, 자녀한글지도 등 지원. -각 분야에 맞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수료 및 한국어교원능력 3급 이상 소지자, 아동복지학 및 유아교육전문,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자.	
언어전문가	한국어강사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인력 중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한국어교원양성수료 및 한국어교원3급 이상 소지자.
	언어지도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수준을 파악하여 자녀의 언어발달 진단과 언어발달교육, 보호자 상담 및 서비스기관 연계 및 적절한 교육방법을 제공하는 인력.
	이중언어교사	-한국어구사가 가능한 결혼이민자로 해당국가 출신의 모국어 교수능력이 있는 자 및 한국어능력시험 중급이상 합격자.
	통번역전문요원	-결혼이민자 해당국가 출신으로 한국어구사 능력이 탁월하며 원만한 성품을 소유한 결혼이민자로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한국어능력시험 중급이상 합격자.
다문화 이해 강사	-법무부의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사회이해 사회통합이수를 위한 영역의 강의를 담당하는 인력.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제공 및 편견의 해소, 상호 이해를 높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다문화 가족복지 (관련전문가) 서포터(협조자)	-다문화가족을 주요 업무로 하지 않지만, 직·간접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제공하는 인력. -공무원, 교사, 기관 종사자 등 결혼이민자를 고객으로 대하는 인력.	

### <다문화 가족복지 전문 인력의 유형>

1. 위의 표와 같이 다문화 전문 인력을 유형화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1-1. ①번과 ②번을 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유형을 나누는 것이 현장과 다르다  
② 유형 구분의 근거가 불분명 하다.  
③ 유형을 구분해도 실제 전문가가 부재하다.  
④ 기타(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문화가족복지 전문가’의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2-1 ①번과 ②번을 답하신 경우 더 바람직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① 다문화가족복지 건강가정사  
② 다문화가족복지 사회복지사  
③ 다문화가족 전문가  
④ 기타(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문화가족복지 전문가’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3-1 ①번과 ②번을 답하신 경우 수정, 보완되어야 할 직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이주민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  
②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를 명명해야 한다.  
③ 기타(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방문교육지도사’의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 4-1 ①번과 ②번을 답하신 경우 더 바람직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① 다문화가족 보육교사  
② 다문화가족 한글지도교사  
③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사  
④ 기타(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5-1 ①번과 ②번을 답하신 경우 수정, 보완되어야 할 직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한국어교육과 자녀양육지도사 직무를 명확히 해야한다.
- ② 방문지도사는 상담 서비스도 담당한다.
- ③ 기타(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다문화 이해 강사'의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6-1 ①번과 ②번을 답하신 경우 더 바람직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 ① 다문화 전문 강사
- ② 다문화 강사.
- ③ 기타(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다문화 이해 강사'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7-1 ①번과 ②번을 답하신 경우 수정, 보완되어야 할 직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다문화사회 이해를 위한 교육 인력
- ②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인력
- ③ 기타(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다문화 가족복지 관련 전문가'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8-1 ①번과 ②번을 답하신 경우 더 바람직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 ① 다문화 가족복지 준전문가
- ② 다문화 가족복지 협력자
- ③ 다문화 가족복지 서포터즈
- ④ 기타(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다문화 가족복지 관련 전문가'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타당하지 않음 ② 타당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

9-1 ①번과 ②번을 답하신 경우 수정, 보완되어야 할 직무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다문화가족 지원 네트워크
- ②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 ③ 기타(직접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